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1 2014년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4. 9. 5.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4. 9. 25.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4. 9.26.)
 - 안건상정 및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4. 9.29.)
 - 계수조정
 - 수정안 발의 및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류경기)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

- 금년도 당초예산은 24조 4,133억원으로 일반회계 16조 9,269억원 과 특별회계 7조 4,86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최근 시민들의 안전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세월호, 지하철, 도로함몰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무상보육, 기초연금제도 개편, 필수예방무료접종화사업 확대 등 정부 복지확대에 따른 추가부담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 부족 등으로 교육청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시내버스의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 등 에도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1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 계잉여금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보전금을 활용하고, 안전, 일자리, 복지 등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원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최대한 충당하여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음

2.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금년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규모는 3,857억원으로, 일반회계 3,404억원과 특별회계 453억원임 ○ 추경 후 예산 총계규모는 그간 7차례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24조 4.776억원 보다 1.6% 증가한 24조 8.633억원임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첫째, 경기 침체 지속으로 세입 결손이 전망되는 지방소득세 1,500억원, 지방소비세 1,000억원, 자동차세 500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취득세 3,350억원을 증액하였음
- 둘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정부 보전액 819억원, '13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41억원, 잠실야구장 광고사용권 수익금 104억원, 창동복합공연장 건립사업 이행보증금 64억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금 34억원 등 2,962억원을 증액하였음
- 셋째,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필수 예방접종무료화사업 등 국고 추가내시액 92억원을 증액하였음

(2)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도시철도사업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미확보됨에 따라 신림경전철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감액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버스재정적자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500억원을 증액하고, 교통개선분담금 연계사업의 분담금 630억원 감액하여 총 130억이 축소 반영되었음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출규모 확대를 반영하여 '13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1억원을 증액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국고 보조금 53억, 정부자금채 71억원 등 124억원을 증액하였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배출량 감소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21억원을 감액하였음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열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사용료 438억원, 건축계획 지연에 따른 분담금 44억원 등 482억원을 감액하였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00억원, 시비 분담금 400억원 등 800억원을 증액하였음

(3)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789억원을 감액하였음

- 첫째,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 75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909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129억원 감액 조정하였음
- 둘째, 자치구 지원에 대해서는 '13년도 정산결과 공동재산세 재정보전금 139억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청 전출금에 대하여는 '13년 보통세 및 지방교육세 정산결과와 취득세감면 정부보전액을 반영하여 684억원 증액하였음
- 셋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 1,06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0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음
- 넷째,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감분 및 시비 매칭분을 조정하여 1,966억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로함몰 사고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해소, 고용안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내 집행할 필요가 있는 안전, 일자리 예산 등 458억원을 반영하였음

Ⅲ.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1. 추가경정예산안의 법적근거 및 편성요건

-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재정법」 제89조¹)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경우와 같이 명시적 제한규정은 없음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제130조² 및 「지방재 정법」제45조³)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관련법의 입법취 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¹⁾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²⁾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³⁾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조 4,776억원⁴⁾ 대비 1.6%, 3,857억원을 증액한 24조 8,633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기정예산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대비 증감	증가율
		당초예산	간주처리			
총계규모	24,477,548	24,413,331	64,217	24,863,265	385,716	1.6
일반회계	16,959,451	16,926,900	32,551	17,299,876	340,424	2.0
특별회계	7,518,096	7,486,431	31,665	7,563,389	45,292	0.6

[※] 기정예산은 당초예산(24조 4,133억원)과 2013년 간주처리예산(642억원)임

- □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세출예산에서 기정예산(16조 9,594억원)보다 3,404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세입예산의 경우, 시세세입 3,283억 4,400만원, 세외수입
 △ 1,912억 4,500만원, 국고보조금 92억 2,500만원 등을
 기정예산보다 증・감조정 요청한 것이며
 -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예비비 감액을 포함한 85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편성요청한 바

⁴⁾ 기정예산은 당초예산(24조 4,133억원)과 총7차의 간주처리예산(642억원)임

- 세출 구조조정(△365억원), 자치구 재정보전금(△139억원),
 예비비(△206억원) 등 △835억 8,600만원에 대한 감액조정을 요청하고,
- 안전, 일자리 사업 등(345억원),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대응편성(1,455억원), 교육청 전출금(684억원), 감채기금 전출금(1,060억원), 특별회계 전출금(900억원) 등 4,240억 1,000만원에 대해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 □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조정을 포함한 44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1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13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171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124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21억원), 집단에너지특별회계(△482억원), 의료급여기급사업특별회계(800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출 증·감 8,500만원 경정)에 대한 세출예산을 증·감하여 기정예산(7조 5,180억원)보다 453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3. 주요 검토사항

Ⅱ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관련

□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시세수입의 경우, 취득세 (3,350억원), 주민세(3,298억 2,900만원), 자동차세(△500억원), 지방소비세(1,933억 4,400만원원), 지방소득세(△4,798억 2,900만원) 등에 대한 각 세목별 증감조정을 통하여 지방세수입중 3,283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인 바

〈표 3-1〉 지방세 수입중 추경편성 요청 현황

		기 정	예 산	추 경 예 산 (안)	증 감
		(A)		(B)	(B-A)
\preceq	· 계	계 8,396,733		8,725,077	328,344
	취 득 세		2,474,204	2,809,204	335,000
	주 민 세		66,200 ^{주1}	396,029 ^{₹2)}	329,829
	자 동 차 세		1,112,072	1,062,072	△50,000
	지방소비세		782,250	975,594	193,344 ^{₹3)}
	지방소득세	3,	962,007 ⁷⁴	3,482,178	△479,829

- ※ 주1)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임 (종업원분 제외)
 - 주2)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당초 지방소득세중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경정할 경우임
 - 주3)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2,933억 4,400만원을 "지방소비세"로 세목을 경정하고, 지방소비세 △1,000억원 감액편성할 경우임
 - 주4)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임 (종업원분 포함)

-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중 종업원분(3,298억원)을 주민세로 경정하고, 세외수입에 편성된 '취득세 영구인하정부보존분'(2,933억 4,400만원)을 당초 교부취지에 맞추어 지방소비세로 세목을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취득세 세입예산의 경우,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소 득세 폐지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되어 당초 동 세목에 대한 징수전망액 등을 상향편성하고자 기정예산(2조 4,742억 400 만원)대비 13.5%, 3,35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2〉 취득세 징수실적 및 추경편성요청 현황

				기 정 예 산	징 수 실 적	추경예산(안)	증 감
				(A)	(6월 현재)	(B)	(B-A)
추	4	득	세	2,474,204	1,576,518	2,809,204	335,000
	부	동	산	2,000,629	1,324,285	2,367,250	366,621
	차		량	473,575	252,233	441,954	△31,621

- 주민세의 경우, 기정예산(662억원)보다 4.9배 증가한 3,298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동 세목의 세수신장률이 매우 낮은 세목임에도 금번 추경을 통하여 대규모 증액조정을 요청한 것은 금년 1월 「지방세법」개정5)을 통하여 지방소득세중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변경

함으로써 징수실적 및 전망액이 증가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표 3-3〉 주민세 징수실적 및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	징 수 실 적	추경예산(안)	증 감
				(A)	(6월 현재)	(B)	(B-A)
Ž	<u> </u>	민	세	66200	170,387	396,029 ^{₹1)}	329,829
	균	등	분	45,971	50	45,971	0
	재	_	_	20,229	268	20,229	0
		업 원		0	170,069	329,829	329,829

[※] 주1) 주민세의 당초 예산액은 662억원이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 1. 1부터 지방소득세중 "종업원분"(3,298억원)을 주민세로 경정

○ 자동차세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1조 1,120억 7,200만원) 중 △500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3-4〉 자동차세 징수실적 및 추경편성요청 현황

				기 정 예 산	징 수 실 적	추경예산(안)	증 감
				(A)	(6월 현재)	(B)	(B-A)
ス	가 동	차	세	1,112,072	570,309	1,062,072	△50,000
	소	유	분	584,803	349,142	584,803	0
	주	행	분	527,269	221,167	477,269	△50,000

⁵⁾ 지방세법 제74조 및 85조 등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소득세의 소득분과 종업원분중 소득분은 지방소득 세로 하고, 종업원분은 주민세로 변경 (2014. 1. 1 신설)

- 소유분의 경우, 소비위축 등으로 1월 선납분이 전년대비 감소6)
 한 측면이 있으나 서울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이 하향 (14.97%→10.59%)되어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비세 세입예산의 경우, 경제성장 및 민간소비와 연동되는 세목으로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4.0%에서 3.8%로 하향조정한 바
 - 동 세목의 경우에도 민간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기정예산 (7,822억 5,000만원)대비 △12.8%, △1,000억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표 3-5〉 지방소비세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백만원)

					기 정	예 4	난	추경예	산(안)	증	감
					(A	()		(B)	((B-A)
ス] 방	소	刊	세	,	782,2	50		975,594)		193,344
	(당초)	기	_			782,2			682,250		△100,000
	(추경)		기수입				0		293,344		293,344

아울러 금년도 예산편성시 세외수입증 기타수입(그외수입)7)
 에 '14년 취득세 영구인하 정부보전분 2,93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을 통하여 세외수입증 그외수입
 항목에서 지방소비세로 경정을 요청한 바

^{6) &#}x27;13년 1월 2,130억원, '14년 1월 1,998억원

⁷⁾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5046 (2012.11.07.)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액 보전 분은 세입예산과목 중 '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통보

- 동 세원이 '13년 9월 안전행정부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취득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⁸⁾ 지방소비세중 취득세 등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 지방세법에 열거된 교부취지 등에 맞추어 세외수입중 그외수입에 편성된 '14년도 취득세 영구인하 정부보전분(2,933억4.400만원)을 지방소비세로 경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수익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3조 9,620억 700만원)대비 △12.1%, △4,798억 2,9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하고,「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종업원분(3,298억 2,900만원)을 주민세로 경정하고자하는 것임

^{8) 「}지방세법」 <개정 2013.12.26.>

[□]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u>감소되는 취득</u>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 제71조(납입)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u>지방소비세</u>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지방소득세는 서울시의 노력에 따라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세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 년도 예산심사시 연초 발표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소비둔화로 경기침체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동 세목을 서울시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 금년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이 연초보다 하향조정되어 금 번 추경을 통하여 지방소득세의 세수결손을 감소시키고자 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동 세목에 대한 내년도 세입예 산 추계시 보수적인 시각에서 추계하여 감추경 하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되는 사례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3-6〉지방소득세 징수실적 및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징 수 실 적	추경예산(안)	증 감
		(A)	(6월 현재)	(B)	(B-A)
ス] 방 소 득 세	3,962,007	2,388,254	3,482,178	△479,829
	소 득 세 분	758,357	582,419	744,463	△13,894
	법 인 세 분	1,340,965	979,423	1,195,902	△145,063
	특별징수분	1,532,856	826,412	1,541,813	8,957
	종업원분주1)	329,829	0	0	△329,829

※ 주1) 「지방세법」 개정으로 당초 지방소득세중 종업원분이 주민세중 종업원분으로 경정

(2) 일반회계 세외수입 관련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 잠실야구장 광고사용료 입찰수익금(당초 세입예산 72억 2,000 만원) 103억 5,000만원을 세입처리하고자 하는 바 당초 낙찰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입찰한 결과 최고응찰가(103억 5,000만원)로 낙찰되어 이를 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세입처리 하고자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금은 이미 지난 4월, 34억 1,800만원이 세외수입중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되어 이를 금 번 추경을 통해 경정하고자 하는 것임
- 창동복합공연장 민자사업 해지에 따른 법원공탁후 신용보증기 금에 청구하여 수납된 보증금(64억 1,800만원)을 세외수입중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 요청한 것으로 해당 세입과목에 대한 증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7〉세외수입(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경편성요청 현황

	പി	산고	1 早.		개 요		예 산 의	1
	91	~U.L	75		/II J.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7	경상	적서	외수	입				
	기	타	나 용	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용사용료 (잠실야구장 광고사용료 입찰수익금	13,533	10,350	23,883
ç	임시	적서	외수	입				
	ユ	외	수	입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금	1,015	3,418	4,434
	ユ	외	수	입	창동복합공연장 사업이행보증금	_	6,418	6,418

□ 취득세 인하·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관련

- 취득세 인하·감면 정부 미보전금(819억원)을 세외수입으로 보 전하고, 이를 금번 추경에서 세외수입중 **그외수입**으로 세입조 치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생애최초주택취득자에 대해 한시적('13. 4.1~12.31)으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⁹⁾함에 따른 취득세 등 세입결손분중 '14년 2월 현재 정부미보전분 344억원 1,400만원과 '13년 취득세율 인하 이른바 '8·28 대책'에 따른 소급적용분중 정부미보전분 474억 5,700만 원을 금번 추경에서 세입조치하고자 하는 것임

〈표 3-8〉 '14년도 추경예산안 관련 정부 취득세 감면액 보전현황

(단위 : 억원)

주	요	내	o l o	감 면 기 간	정부결정	정 부	보 전	현 황
Τ	`yr	네	6	선 인 기 신	78 下包 78	계	보 전 액	미보전액
					계	282,201	200,330	81,871
		주택 취 ^무 00% 면		'13. 4. 1 '13.12.31	'13. 4. 1	131,369	96,955	34,414
취득 (8.	•	영구 인 소급적	- '	'13. 8.28 '13.12.31	'13.12.26	150,832	103,375	47,457

⁹⁾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취득세 면제

○ 또한 세외수입증 기타수입(그외수입)에 편성한 '14년 취득세영구인하 정부보전분 2,933억 4,400만원을 「지방세법」에열거된 교부취지 등¹⁰⁾에 맞추어 세외수입중 그외수입 항목에서 지방소비세로 세입과목을 경정하고자 세외수입중 그외수입을 △2.933억 4.400만원 감액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3)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관련

□ 국고보조금 관련

- 회계연도 개시이후 국고보조금에 대한 당초 내시액이 증·감 변경 통보되거나 국고의 기준보조율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기정예산(2조 2,228억 9,900만원)보다 92억 2,500만원 추가 증액편성하여 국고보조금을 2조 2,321억 2,500만원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바
 - 기초연금(국비 328억원 추가교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국비 174억 6,800만원 추가교부), 필수예방접종 무료화(국비 77억 100만원 추가교부) 등에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세입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¹⁰⁾ 지방세법 제71조(납입)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한다.

지역형 사회적 기업지원(국비 △18억 9,000만원 감액통보),
 종묘광장 정비(국비 △7억원 감액통보) 등의 사업에 대해 국비가 감액통보 됨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감액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순세계잉여금 관련

-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2,941억 7,100 만원)중 「지방재정법」제52조11)에 근거하여 결산상 잉여금을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13년도에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된 지방채12) 상환에 지출된 1,000억원13)을 제외하고,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중 나머지 1,941억원을 금번 추경에 세입조치(보전수입등내부거래) 하고자 하는 것임
-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 및 제61조에 근 거하여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11)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u>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u>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12) 2013}년도 영유아무상보육 관련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지방채

[※] 차입규모: 2,000억원, (금융기관차입, 금리 3.16%)

¹³⁾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366 (2014. 5.19), "서울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있는 바¹⁴⁾ 직전회계연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금번 추 경에 세입조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자체재 원으로 재정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라는 점에서 이 월액 및 국고집행잔액 등을 최소화시켜 순세계잉여금이 안정 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4)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표 3-9〉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일	반 회 계	16,959,451	340,424	17,299,876	
	지 방 세 수 입	12,407,276	328,344	12,735,620	
	보 통 세	10,932,046	328,344	11,260,390	
	취 득 세	2,474,204	335,000	2,809,204	· 부동산 거래증가 335,000
	주 민 세	66,200	329,829	396,029	。 세목경정 (지방소득세→주민 세) 329,829
	자 동 차 세	1,112,072	△50,000	1,062,072	주행분 감소 △50,000
	지방소비세	782,250	193,344	975,594	 지방소비세 감소 세목경정 (세외수입→지방소비 293,344 세)
	지방소득세	3,962,007	△479,829	3,482,178	 지방소득세 감소 세목경정 (지방소득세→주민 △329,829세)
,	세 외 수 입	1,425,163	△191,245	1,233,917	
	경상적 세외수입	543,131	10,350	553,481	
	기타사용료	36,056	10,350	46,406	• 잠실야구장 광고수익 10,350
	임시적 세외수입	882,031	△201,595	680,436	
	변상금 및 위약금	7,192	11	7,203	
	그 외 수 입	369,954	△ 201,606	168,348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 3,418 ・ 창동복합공원장 민자해지시 6,418 지급금(보증금) ・ 취득세 인하감면 정부 미보전액 81,900 ・ 취득세 인하보전분 정부보전 세 △293,344 목변경 (세외수입→지방소비세)
	국고보조금 등	2,370,144	9,225	2,379,370	
	국고보조금	2,222,899	9,225	2,232,125	• 국고보조금 증·감통보 9,225
	보전수입 등 내 부 거 래	335,835	194,100	529,935	
	순세계잉여금	_	194,100	194,100	。'13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94,100

(4) 특별회계 세입조정 관련

-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155억원)중 △10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 신림선 경전철 건설 △10억원(국고보조금)이 감액통보되어동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을 요청한 것임
- □ 도시교통본부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1조 2,136억 5,300만원)중 △129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바
 - 교통개선부담금중 △629억 5,000만원(일반부담금)을 감액조 정 요청하고,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을 위하여 타회계로부터 전입하여 500억원(기타회계전입금)을 추가로 증액편성 요청 한 것임
- □ 경제진흥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1조 2,345억 4,500만원)보다 123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국고보조금 등 52억 9,600만원(국고 보조금)이 추가교부되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 화를 위한 국고융자금 70억 6,300만원(정부자금채)이 추가 확보되어 이를 동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 도시안전실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7,000억원)중 $\triangle 20$ 억 5,400만원(하수도사용료)을 감액편성 요청한 바
 - 동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에 대한 감액편성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고자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을 요청한 것임
- □ 기후환경본부 소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2,950억원)중 △482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바
 - 동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기타사용료 수입(지역냉·난방 열공급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서울시 25만여 세대에 지역 냉· 난방열 생산판매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나 외기온도 상승으로 열판매가 감소되어 당초 세입예산(2,355억 1,600만원)보다
 △438억원 감액한 1,917억 1,6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또한 분담금수입(열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수입)은 마곡지구택지분양 및 건축계획지연으로 분담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당초 세입예산(98억 6,300만원)보다 △44억원 감액한 54억6,300만원으로 분담금수입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아울러 동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감액요청함에 따라 세출예
 산중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 △438억원, 마곡지구 집단

에너지공급(특) △44억원을 감액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상호연계된 세입·세출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 □ 복지건강실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7,467 억원)보다 80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의료급여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400억원 추가교부됨에 따라 동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중 국고보조금을 기정예산보다 400억원(국고보조금) 증액조정하고, 국비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대응편성을 위하여 400억원(기타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3-10〉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Ê	- 별 회 계 ^{주 1)}	7,518,096	45,292	7,563,389	
	도 시 철 도 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1,115,500	△1,000	1,114,500	∘ 국고보조금(신림선 경전철) △1,000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213,653	△12,950	1,200,703	 교통개선분담금 △62,950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시내버스) 50,00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251,805	17,137	1,268,942	· 순세계잉여금 17,137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234,545	12,359	1,246,904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5,296 국고보조금 등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7,063 시설현대화
	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700,000	△2,054	697,945	 하수도사용료 수입 △2,054
	집단에너지 공 급 사 업 특 별 회 계	295,000	△48,200	246,800	○ 열판매수입 △43,800 ○ 시설분담금 수입 △4,400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746,700	80,000	826,700	• 국고보조금40,000• 기타회계 전입금40,000

[※] 주1) 추경안중 조정 요청된 7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11개 특별회계 총계

②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국고보조금 증액 관련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전담하는 종합취업지원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인원 증가(당초 840명→917명), 센터 신규지정¹⁵⁾ 등으로 국비가 추가내시¹⁶⁾됨에 따라 기정예산(96억 1,900만원)보다 5억 8,300만원(국비 1억 9,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중 추경 증액요청 내역

구 분	기정예산	증액	사업내용
소계 ^{주1)}	$(\times 7,294)$ 9,619	(×196) 583	시비대응편성(3억 8,700만원)
새일여성인턴	$(\times 2,218) \\ 2,722$	(×109) 187	새일여성인턴 (970명×300만원, 월50만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566) 1,070	(×△48) △34	센터당 평균 35,800천원
취업설계사 인건비	$(\times 1,237) \\ 2,428$	(×0) 47	취업설계사(일반) 126명×18,900천원 취업설계사(유형별) 10명×9,450천원(6개월)
취업설계사 4대보험료, 퇴직충당금	(×120) 120	(×111) 343	취업설계사(일반) 126명×3,540천원 취업설계사(유형별) 10명×1,770천원(6개월)
광역본부 4대보험료, 퇴직충당금	(×7) 7	(×7) 23	취업설계사(광역본부) 9명×3,540천원
직업교육훈련	$(\times 2,997) \\ 2,997$	(×15) 15	직업훈련과정 130개

[※] 주1) 산출내역은 증·감조정 요청한 내역만을 표기한 것으로 동 사업의 예산액과 차이가 있음

¹⁵⁾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1457(2014. 5.26) "2014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 법"

¹⁶⁾ ①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83(2014. 1. 9) "2014년 새일센터 사업 확정내시 통보 및 국고보조 금 신청 안내"

②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91(2014. 1. 9) "2014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광역본부, 공단형, 온라인) 확정내시 통보 및 국고보조금신청 안내"

③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1579(2014. 6. 5) "2014년도 유형별 새일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 금 확정내시 수정통보"

④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2195(2014. 8.14) "2014년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새일여성인 턴, 직업교육훈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소관 어린이집 지원(보조)은 기 정예산(1,187억 1,800만원)보다 시비 51억 1,000만원을 증 액편성 요청한 바
 - 당초 만2세 이하 담당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월12만원)
 를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중 보건복지부가 만2세 이하 담당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인상(월12만원→월15만원)하고,17) 교사겸직원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월 7만 5,000원)
 를 지급18)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 이미 지난 7월 제6차 간주를 통하여 동 사업에 국비 31억원 이 교부되고, 이에 대응편성 되어야 할 시비 51억원을 금번 추경에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소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은 기정예산(126억 1,100만원)보다 8억 8,600만원(국비 2억 9,500만원, 시비 5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지침을 개정하여 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을 당초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하고,¹⁹⁾ 국비 2억 9,500만원을 증액내시²⁰⁾함에 따라 시비 3억 4,400만원이 대응편성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¹⁷⁾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p.409~410)"

¹⁸⁾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730 (2014. 2.12) "2014년도 어린이집지원(교사겸직원장지원비) 집행안내"

¹⁹⁾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20683(2014. 9.23) "13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개정(종일제 연령확대) 등 안내"

²⁰⁾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86(2014. 1.10) "2014년도 아동양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다만, 종일제 돌봄수당 추가분(1,050가정)의 경우, 종일제 돌보미에게 시간당 1천원을 추가지원 하고자 국비 증액없이 시비 2억 4,700만원을 증액요청한 바,
- 서울시 전체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증액요청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그동안 사업주관부서가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한 사례가 있고,²¹⁾ 중앙정부가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²²⁾ 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에는 종일제 수당 인상분에 부족재원 을 시비로 편성하기 보다는 국고가 매칭되어 편성될 수 있도 록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여성가족정책실 추경편성현황(국고보조금 증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7,294)	(×196)	(×7,490)	국비 확정내시 증액
	9,619	583	10,202	3개소 추가지정
어린이집 지원(보조)	(×13,066)	(×-)	(×13,066)	국비 확정내시 증액
	118,718	5,110	123,829	시비대응분 편성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5,380) 12,611	(×295) 886	(×5,675) 13,497	국비 증액통보 등

²¹⁾ 여성가족정책실, ① 출산육아담당관-27551 (2013.12.10.), "201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개정의견 제출", ② 출산육아담당관-3471 (2014. 2.17),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가격 개편안에 대한 의견제 출"

^{22) &#}x27;13년 7월 기준 : 342가정→'14년 9월 현재 451가정

□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소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 대화사업²³⁾은 기정예산(900억원)보다 123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14년 2월 국비 52억 9,600만원이 확정내시²⁴⁾됨에 따라 국고융자 70억 6,3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편성 하고자 하는 것임

〈표 4-3〉경제진흥실 추경편성현황 (국고보조금 증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7,000)		(×32,296)	국비 추가교부
시설현대화사업	90,000		102,359	국고융자로 대응분 편성

-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은 기초 생활수급자로 선정²⁵⁾된 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14년 7월 현재 기초생활수급 자가 전년도(20만 2,991명)보다 3,728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비(174억 6,900만원)와 시비(72억 600만원)를 추가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년 회계 연도종료가 임박하여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전용을 통해

²³⁾ 국비 30% : 국고융자 40% : 시비 30%

²⁴⁾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693 (2014. 2.13) "14년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조정 결과 및 확정내시 통보"

²⁵⁾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①, ②의 기준 동시 충족)

①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4인가구 163만원)

②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 7

시비매칭분을 확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시비 증액분을 자치구의 실제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리 부족재원을 확보하고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발생가능한 국·시비 부족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된 전용사례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되나 국·시비 대응편성 사업의 경우, 정부의 국비내시에 근거하여 대응되는 시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점에서 사업주관부서의 의지만으로 절차적 근거없이 시비를 대응편성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사료됨
- 아울러 금번 추경을 통하여 국비를 증액조정 요청하고 있으나 국비의 증·감에 대한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없음에도 이를 일 방적으로 증액조정하는 것은 결산상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증액편성 요구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가구가 당초(9,328가구)보다 250가구 증가함에 따라 '14년 7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²⁶⁾되어 국비 1억 2,2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²⁶⁾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218 (2014. 7.16), "2014년도 양곡할인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1차)"

- □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긴급복지 지원사업²⁷⁾은 최저 생계비 150%이하의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년 8월 국비가 추가내시²⁸⁾됨에 따라 국비(30억 1,900만원)와 시비(15억원 900만원)를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초노렁연금 지급사업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 도입에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고, 수급자수도 당초(57만 5,000명)보다 2만 3,000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 바²⁹⁾ 국고보조금 328억원 및 시비 79억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임
- □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은 기정예산(75억 5,800만원)보다 17억 8,1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이후 국비 6억 1,300만원이 확 정교부30)되어 시비 11억 6,800만원이 추가적으로 대응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²⁷⁾ 국비 50%: 시비 25% : 구비 25%

²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889 (2014. 8. 7), "2014년도 긴급복지 국고보조금 3차 변경내시 (200억 상향)통보"

²⁹⁾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0318(2014. 5.21) "기초연금 시행준비 종합계획"

³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82 (2014. 1. 9), "201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

- □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소관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³¹⁾은 금 년도 예산편성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소아폐렴구균 접종항목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신규증액된 바
 - 증액편성된 국비(77억 100만원)와 대응편성이 필요한 시비 (94억 2,200만원)를 포함한 171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 차원에서 소요예산에 대한 증액편성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에도 지방비를 대응편성해야 하는 자치 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비를 증액편성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대응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 무상 보육의 경우와 같이 점증적으로 시비가 증액편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 해당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서울시로서는 동 사업의 일방적 인 확대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재정압박 요인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특별교부금 또는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을 적극적 으로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사업(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당초(3,682억 2,500만원)보다 400억원 증액하여 확

³¹⁾ 만12세이하 영유아 및 만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등 13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

정³²⁾함에 따라 국비(400억원)와 시비(400억원)를 추가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복지건강실 추경편성현황(국고보조금 증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95,561)	(×17,468)	(×413,029)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589,587	24,675	614,262	급여액 증가
정부양곡할인 지원	(×12,684) 13,491	(×122) 182	(×12,806) 13,674	국비 변경내시
긴급복지 지원	(×4,359) 6,539	(×3,019) 4,529	(×7,379) 11,069	국비 추가내시
기초노령연금 지급	(×682,983)	(×32,800)	(×715,783)	대상자 증가,
	838,492	40,700	879,192	연금액 증액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	(×613)	(×613)	국비 확정교부
지원	7,558	1,781	9,339	
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	(×15,499) 36,949	(×7,701) 17,124	(×23,201) 54,073	국비 변경내시
의료급여사업	(×368,225)	(×40,000)	(×408,225)	국비 확정내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6,700	80,000	826,700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정예산(95억 3,300만원)보다 7억 8,600만원 증액편 성 요청한 바
 - 동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세대당 5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를 발급하였으나 국비가 당초 가내시액보다 5억 800만원 증액교부되어 시비 대응편성분 2억 7,8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요청한 것임

³²⁾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9 (2014. 1. 2), "2014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풍납토성의 지하유물층 보호를 위한 사유지 매입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중 국비 87억 2,400만원이 추가교부되어 시비 대응 편성분 37억 4,000만원이 포함된 124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은 기정예산(13억 1,100만원)보다 시비 4,400만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으로 '14년 1월 국비가 확정통보33)되어 해당국비(5,600만원)는 이미 지난 '14년 7월 간주처리(6차)된 바,시비매칭분 4,400만원을 금번 추경에서 대응편성 요청한 것임

〈표 4-5〉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 추경편성현황(국고보조금 증액)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문화관광 문화이용권(문화비우처)사업	$(\times 6,168)$	(×508)	(×6,676)	국비 추가교부	
디자인본부	正好~16位(正好中下/1/16	9,533	786	10,319	(사업내용확대 등)
"	풍납토성 복원	$(\times 26, 275)$	(×8,724)	$(\times 35,000)$	사유지매입
"		37,536	12,464	50,000	국비 추가 내시
"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times 286)$	$(\times -)$	$(\times 286)$	국비 추가 교부
		1,311	44	1,355	4月 十/ 平十
도시안전실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	$(\times 3,386)$	$(\times -)$	$(\times 3,386)$	국비확정에 따른
조기인엔널	점프장간 하수암거정비	6,773	1,103	7,876	시비부족액 편성
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times 485)$	(×99)	(×584)	구조대원 보호장비
그 경제한근구	유지관리	1,878	198	2,076	국비 증액
"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times 70)$	$(\times 27)$	$(\times 97)$	119구급대 장비보강
		2,752	55	2,807	국비 증액
"	대테러장비 보강	$(\times 60)$	$(\times 12)$	$(\times 72)$	구로소방서 국비 증액
		228	25	253	구로소방서 국비 증액
"	ઠમોત્રાંગનો O M	$(\times -)$	(×40)	(×40)	헬기공동활용체계 구축
	소방항공대 운영	1,524	80	1,604	국비 증액

³³⁾ 문화재청, 안전기준과-281('14.1.23) "2014년도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 확정통 지"

〈표 4-6〉국비 증액요청 사업현황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복지건강실	의료급여사업(특)	$(\times 368,225)$ 746,700	(×40,000) 80,000	(×408,225) 826,700	국비 확정통보
복지건강실	기초노령연금지급	(×682,983) 838,492	(×32,800) 40,700	(×715,783) 879,192	대상자 증가, 연금액 증액
복지건강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95,561) 589,587	$(\times 17,468)$ 24,675	(×413,029) 614,262	수급자 증가로 급여액 증가
복지건강실	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	(×15,499) 36,949	$(\times 7,701)$ $17,124$	(×23,201) 54,073	국비 변경통보
문 화 관 광 디자인본부	풍납토성 복원	(×26,275) 37,536	(×8,724) 12,464	(×35,000) 50,000	국비 추가통보 (사유지매입)
경제진흥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7,000) 90,000	$(\times 5,296)$ 12,359	(×32,296) 102,359	국비 추가교부
여성가족 정 책 실	어린이집 지원(보조)	(×13,066) 118,718	(×-) 5,110	(×13,066) 123,829	국비 확정통보 시비대응분 편성
복지건강실	긴급복지 지원	(×4,359) 6,539	(×3,019) 4,529	(×7,379) 11,069	국비 추가통보
복지건강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7,558	(×613) 1,781	(×613) 9,339	국비 확정교부
도시안전실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 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	(×3,386) 6,773	(×-) 1,103	(×3,386) 7,876	
여성가족 정 책 실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5,380) 12,611	(×295) 886	(×5,675) 13,497	국비 증액통보 등
문 화 관 광 디자인본부	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사업	$(\times 6,168)$ 9,533	(×508) 786	(×6,676) 10,319	국비 추가교부 (사업내용확대 등)
여성가족 정 책 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7,294) 9,619	(×196) 583	(×7,490) 10,202	
소 방 재 난 본 부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485) 1,878	(×99) 198	(×584) 2,076	국비 증액 (구조대원 보호장비)
복지건강실	정부양곡할인 지원	(×12,684) 13,491	(×122) 182	(×12,806) 13,674	국비 변경통보
소 방 재 난 본 부	소방항공대 운영	(×-) 1,524	(×40) 80	(×40) 1,604	국비증액 (헬기공동활용체계 구축)
소 방 재 난 본 부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70) 2,752	(×27) 55	(×97) 2,807	국비증액 (119구급대 장비보강)
문 화 관 광 디자인본부	= , ,, , , , , , , , , , , , , , , , ,	(×286) 1,311	(×-) 44	(×286) 1,355	국비 추가교부
소 방 재 난 본 부	대테러장비 보강	(×60) 228	(×12) 25	(×72) 253	국비 증액

(2) 국고보조금 감액 관련

-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소관 영유아 보육료(보조) 사업은 국고보조금 △389억 4,7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45억 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예산편성당시 국비추가확보에 대한 가능성 등을 예상하고, 당초 정부가 가내시한 기준보조율(30%)보다 상향된 40% 기준으로 소요예산(8,715억 800만원, 국비 3,867억 8,600만원 포함)을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보건복지부가 기준보조율을 35%로 확정통보함에 따라 기정예산중 국고보조금을 감액(△389억 4,700만원)하는 것은 물론 매칭비율에 따른시비(270억 8,500만원)를 증액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동 사안의 경우, 금년도 예산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도「영유아보육법」이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시비 부족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당시「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계류되어 있어 법개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13년도의 경우에도 정부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사례가 있어 추가재원확보에 대한 가능성 등을 예상하여 정부가가내시한 기준보조율(30%)보다 상향된 40%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의결한 것이나

- 금년 1월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율을 35%로 확정내시하고³⁴⁾,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확정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을 통하여 기편성된 국고보조금중 △389억 4,7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70억 8,5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금번 추경중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동 사업에 대한 국비변경내시를 통보하고³⁵⁾, 국고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시비에 대한 대응편성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대응편성하지 못하였던 시비 274억 7,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편성 요청한바
 - 동 사안의 경우, 이미 결산이 완료된 지난 회계연도분에 대한 것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³⁶⁾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나
 - 회계연도종료가 임박한 12월 9일 국비가 추가교부되어 사업 주관부서로서는 대응편성할 세출재원은 물론 시비를 대응편성 할 후속조치에 시간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회계연도말 교부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국비

³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2 (2014. 1. 3), "201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³⁵⁾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876 (2013.12. 9), "1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변경내시 및 12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국비 기교부액 2,201억원 → 변경내시 2,381억 6,800만원 (증액교부 180억 6,700만원 포함)

^{36)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가 교부될 경우 매칭하는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지난해 추가교부된 국비(180억 6,700만원)에 대응편성 되었어야 할 시비라는 점에서 '13년도 시비부족편성분 274억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영유아 보육료(보조) 사업의 경우, 동일한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에 영유아보육료, 방과후 아동 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등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는 3개 사업내용을 포함하고있어 개별 사업내용의 예산집행현황과 결산결과를 파악하는데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금번 추경을 통하여 1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보조재원사업과 전입금사업 등을개별 세부사업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됨

〈표 4-7〉영유아보육료(보조) 산출내역 (기정예산)

구 분 기		기정예산	사업내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times 386,786)$ 871,508	
	영유아 보육료		0~2세, 3세 소득하위 70%, 장애아, 시간 연장, 기본보육료
	방과후 아동 보육료	2,679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차상위 일반 취학아 동
	누리과정 보육료	210,440	3~5세 보육료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교육청 편성후 서울시로 전출)

-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소관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에도, 정부가 가내시한 기준보조율(30%)보다 상향된 40% 기준으로 소요예산(3,251억 7,900만원, 국비 1,909억 300만원 포함)을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보건복지부가 기준보조율을 35%로 확정통보37)한 바
 - 기정예산중 국고보조금을 감액(△180억 7,200만원)하고, 매 칭비율에 따른 시비(144억 1,500만원)를 증액편성하여 예산 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는 가내시 기준으로 국비 51억을 편성하였으나, '14년 7월 여성가족부가 당초보다 국비를 감액통보38)함에 따라 기정예산(104억 4,300만원)중 국·시비를 각 1억 5,000만원씩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³⁷⁾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1 (2014. 1. 3), "2014년도 가정양육수당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38)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1626(2014. 7. 4) "2014년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확정내시

⁽변경 4차) 통보"

〈표 4-8〉여성가족정책실 추경편성현황(국고보조금 감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영유아 보육료(보조)		(×△38,947) 15,609		국고보조율 확정통보에 따른 국비감액, 시비증액 편성
가정양육수당 지원		(×△18,072) △3,656		국고보조율 확정통보에 따른 국비감액, 시비증액편성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5,109) 10,443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감액편성

□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지역형 사회적 기업 지원은 '14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고용노동부가 국비를 확정통보³⁹⁾ 함에 따라 기정예산(137억원) 중 국비 △18억 9,000만원과 시비매칭분 △6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9〉경제진흥실 추경편성현황 (국고보조금 감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지역형 사회적 기업 지원	(×10,135) 13,700		(×8,245) 11,169	국고보조금 감액(△1,890) 시비대응분 감액(△640)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회계연 도 개시이후 보건복지부가 당초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감액하여

³⁹⁾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161 (2014. 1.15) "201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국고보 조금 교부결정 통지"

변경통보 $^{40)}$ 함에 따라 기정예산(138억원)중 국비 $\triangle 7,200$ 만원과 시비매칭분 $\triangle 1$ 억 8,2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소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대상인원을 5,200명으로 산정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대상자(4,800명)를 축소하고, 국고보조금을 감액내시⁴1)함에 따라 기정예산(96억 4,200만원)중 국비 △4억원과 시비매칭분 △4억 6,6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소관 금연도시만들기사업은 기정예산(6
 억 2,000만원)중 국비 △1억 9,300만원과 시비매칭분 △
 9,7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기정예산은 보건복지부 가내시⁴²⁾를 근거로 금연구역 감시를 위한 단속요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보 건복지부가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관련예산이 미반영되어 해 당 사업이 폐지됨을 통보⁴³⁾함에 따라 기편성된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전액 2억 9,000만원을 감액조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⁴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55 (2014. 1. 6)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정내시 통 보"

⁴¹⁾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45 (2014. 1. 6), "2014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확정내시 통보 및 e-호조 입력 협조요청"

⁴²⁾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032 (2013.10.15.) "2014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금연지도단속 요원 지원) 국고보조금 가내시(안) 통보"

⁴³⁾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29 (2014. 1. 3) "2014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금연지도단속 요원 지원) 사업폐지"

-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소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경우에도 '13년 7월 보건복지부의 요청⁴⁴⁾에 따라 동 사업의기정예산중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위한 소요예산을 국·시비를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4억 6,500만원)와 시비(△5억 4,200만원) 등 기정예산(10억 700만원) 전액을 감액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요구를 근거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일반적인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최소한 중앙정부의 가내시에 근거하여 시비를 대응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한 이후 회계연도중 국비미편성에 따라 기정예산 전액을 감추경 요청한 바
 - 사업주관부서가 금년도 예산편성 및 시의회의 예산심사가 진행될 시점까지도 정부의 가내시가 없었다면 소요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회계연도개시이후 정부가 국비를 확정·교부하였다고 하여도 기교부된 국비는 간주처리를 통하여 집행하고, 추경으 로 시비를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할 사안이지 동 추경

⁴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620 (2013. 7. 8)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 지자체 실무회의 참석요청(배포자료: 고위험임신 지원계획(안))"

안과 같이 불확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 기정예산 전액을 감추경 요청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편성 사례 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소관 모자보건사업은 난임부부지원 및 청소년 산모 지원을 위해 129억 7,700만원(국비 60억 800 만원, 시비 6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중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금을 감액통보45)함에 따라 기정예산중 국비 △2억원과 시비매칭분 △2억 3,3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4-10〉복지건강실 추경편성현황(국고보조금 감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times 8,547)$ 13,873	(×△72) △255	(×8,475) 13,617	국비 변경내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times 4,450)$ 9,642	(×△400) △866	(×4,050) 8,775	국비 변경내시
금연도시만들기	(×193) 620	(×△193) △290	(×-) 329	국비 미반영 시비편성분 감액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65) 1,007	(×△465) △1,007	(×-) 0	국비 미반영 시비편성분 감액
모자보건사업	(×6,008) 12,977	(×△200) △433	(×5,808) 12,543	국비 변경내시

⁴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041 (2014. 7.30) "2014년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지원) 예산 변경내시 통보"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살곶이다리 원형복원사업은 기정예산(1억 5,000만원)중 △5,0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당초 가내시와 달리 '14년 1월 국비가 감액통보46)
 됨에 기정예산 중 국비 △3,500만원, 시비매칭분 △1,5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종묘광장 정비사업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앞 시민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21억 8,000만원)중 △10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14년 1월 국비가 당초 가내시보다 감액통보되어 기정예산 중국비 △7억원과 시비매칭분 △3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소관 북한산성 보수·보존사 업은 기정예산(7억원)중 국비 △4억 9,000만원과 시비매칭분 △2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당초 금년도 예산은 문화재청 가내시를 근거로 북한산성(대남 문~대서문) 보존을 위한 공사비 등이 편성된 것이나 회계연 도 개시 이후 문화재청이 국비 미교부를 확정통보⁴⁷⁾함에 따라 기편성된 국고보조금 및 시비매칭분 전액을 감액편성 요청 한 것임

⁴⁶⁾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801 (2014. 3.18) "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지침 통보"

⁴⁷⁾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27 (2014. 1.28) "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확정통 지"

〈표 4-11〉문화관광디자인본부 추경편성현황 (국고보조금 감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4,915)	(×△43)	(×4,872)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국가기정판와제 보구 	7,422	33	7,455	시비부담분 증액
살곶이다리 원형복원	(×105)	$(\times \triangle 35)$	(×70)	국비 감액통지에 따른
[연듯이나니 전영국전	150	$\triangle 50$	100	국·시비 감액
종묘광장 정비	(×1,400)	$(\times \triangle 700)$	(×700)	국비 감액통지에 따른
<u> </u>	2,180	$\triangle 1,000$	1,180	국·시비 감액
북한산성 보수·보존	(×490)	(×△490)	(×-)	국비 미교부에 따른
그 인민정 모두 모른	700	△700	0	국·시비 감액

〈표 4-12〉국비 감액요청 사업현황

					(271 - 722)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여성가족	어이지 되어크(되고)	$(\times 386,786)$	(×△38,947)	$(\times 347, 839)$	국비감액, 시비증액
정 책 실	영유아 보육료(보조)	871,508	15,609	887,117	(국고보조율 확정통보)
"	가정양육수당 지원	(×190,903)	(×△18,072)	(×172,831)	국비감액, 시비증액
//	//성강폭구경 시전 	325,179	$\triangle 3,656$	321,522	(국고보조율 확정통보)
경제진흥실	지역형 사회적 기업	(×10,135)	(×△1,890)	(×8,245)	국비감액, 시비감액
경세선궁련	지원	13,700	$\triangle 2,531$	11,169	- 국미급력, 시미급력 -
복지건강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times 465)$	$(\times \triangle 465)$	(×-)	국비 미반영
- 기신경결	지원	1,007	$\triangle 1,007$	0	시비편성분 감액
문화관광	종묘광장 정비	$(\times 1,400)$	$(\times \triangle 700)$	(×700)	국비 감액통지에 따른
디자인본부	0 m 0 0 0 1	2,180	$\triangle 1,000$	1,180	국·시비 감액
복지건강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times 4,450)$	$(\times \triangle 400)$	$(\times 4,050)$	국비 변경통보
기산(8) 관	지원	9,642	$\triangle 866$	8,775	기의 건경o도
문화관광	북한산성 보수·보존	(×490)	$(\times \triangle 490)$	(×-)	국비 미반영
디자인본부	7000 41 40	700	△700	0	시비편성분 감액
 복지건강실	 모자보건사업	$(\times 6,008)$	$(\times \triangle 200)$	$(\times 5,808)$	국비 변경통보
기계산이 된	エハエセハ日	12,977	△433	12,543	7 T TO 6 T
여성가족	' = ' ' ' 0 ' ' '	$(\times 5,109)$	$(\times \triangle 150)$	$(\times 4,959)$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정 책 실	자녀양육지원	10,443	△300	10,143	국·시비 감액편성
보기거가신	 금연도시만들기	(×193)	(×△193)	(×-)	국비 미반영
기계산이 관		620	△290	329	시비편성분 감액
<i>"</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8,547)	$(\times \triangle 72)$	(×8,475)	국비 변경통보
<i>"</i>	업	13,873	$\triangle 255$	13,617	7 1 2004
문화관광	살곶이다리 원형복원	(×105)	$(\times \triangle 35)$	$(\times 70)$	국비 감액통지에 따른
디자인본부		150	△50	100	국·시비 감액
<i>"</i>	국가지정문화재	$(\times 4,915)$	$(\times \triangle 43)$	$(\times 4,872)$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i>"</i>	보수	7,422	33	7,455	시비부담분 증액

(4) 시비 등 증액 관련

-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기정예산(477억 1,800만원)보다 39억 3,000만원(민간위탁금 1억 4,800만원, 사회복지보조 37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사회복지보조"의 경우, 관악구 베이비박스 등을 통한 유기 아동 증가⁴⁸⁾로 시설종사자 82명이 이미 충원되어 인건비 34 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바, 예산확보후 인력증원이 추진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될 필요가 있었으나 유기아동 증가로 관련 종사자 증원이 불가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아동현원이 당초 133명에서 30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관리운영비 3억 2,400만원이 증액편성 요 청되어 추가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과 같이 "민간위탁금"이 편성된 세부사업의 경우, 회계연도중 추가증액이 요구될 수 있는 바, 동 사업의 경우에도 영아전담보호소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제출하였음49)

⁴⁸⁾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18627 (2014. 8.12),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관련 종합대책(안)"중 최근 4년간 유기아동 발생건수: 2011년 43명, 2012년 79명, 2013년 239명, 2014년 130명(7월 현재)

- 특히,「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0)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만 명시할 뿐 추가되는 시설에 대한 내용은 관련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시의회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사업내용이 추가될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미리 동의한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회계연도중 추가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동의 혹은 변 경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하여 회계연도중 증

-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 3. 위탁기간
-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 ③ <u>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u> <u>「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다 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⁴⁹⁾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17505 ('14. 9.16) : 시립꿈나무마을 내 영아전담보호소 운영은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의 여러 업무중 하나의 업무로 별도의 시설로 민간위탁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며,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님 (※ 아동양육시설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위탁관련 사항은 의회 동의 대상임)

^{5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액요구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동의대상 여부를 보다 명확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4-13〉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중 "사회복지보조" 소요예산 증액내역

		기정예산	증액	증액내역
入	나 회 복 지 보 조	33,728	3,782	
Z	l역아동복지센터 설치운영	3,223	57	
	인건비	2,532	57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인원충원(3명)
	운영비	235	_	
	프로그램	456	_	
Ó	ト동복지시설(38개소) 운영	30,106	3,725	
	종사자 인건비	26,439	3,401	양육시설 종사자 97명 충원 인건비 - 기 충원 종사자('13~14. 상반기) : 82명 - 충원 예정 종사자(14. 하반기) : 15명
	시설관리·운영비	3,667	324	0~2세 증가 아동의 시설 관리 운영비 (89,237원×303명×12월=324,465천원)
Z	· 라광아동가정상담소	399	_	

-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소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⁵¹⁾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나
 - 금번 추경을 통하여 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166개 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시비 156억 7,200만원을 편 성요청한 것임

⁵¹⁾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방과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 동 사업이 국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삭감되어 시비로 이를 대체함 으로써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추경을 통한 증액편성요구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 현재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확대하고 있어 동일한 인건비 부족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고보 조사업에서 국비의 추가확보없이 시비를 단독으로 대체편성하 는 것은 세출재원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바 동 사업의 경우에 도 무상보육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금번 추 경편성후 국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4〉여성가족정책실 등 추경편성현황 (시비 증액)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여성가족 정 책 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7,718	3,930	51,648	종사자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증액
"	보육돌봄서비스	$(\times 46,074)$ 126,369	(×0) 15,672	(×46,074) 142,042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혁신기획관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반 마련	1,684	170	1,854	시설물 안전성 진단 등
기획조정실	감채기금 전출금	0	106,000	106,000	감채기금 전출금
비상기획관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2,070	170	2,240	설계변경 및 구조보강에 따른 공사비 부족

- □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 시장 조성사업은 기정예산(7억 5,400만원)보다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인바
 - '14년 3월 중소기업청이 돈암제일시장 및 아현시장을 동 사업의 대상으로 추가선정52)함에 따라 국·시비를 50:50으로 대응 편성하기 위한 추가 소요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인턴십⁵³⁾은 소요예 산 부족분을 정산하고자 43억 8,700만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13년도 채용예상인원 (1,596명)을 기준으로 9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 변경⁵⁴)을 통하여 당초 목표인원보다 실제 채용인원이 증가 (1,596명→1,840명)하고, 정규직 전환율도 상승(53.6%→71.3%)하여 금번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 부족분 43억 8,700만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임

⁵²⁾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655 (2014. 3.18) "2014년 문화관광형시장 선정결과 통보"

⁵³⁾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미취업자들의 경력 형성기반을 제공하고자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 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140만원 이상 지급 조건으로 인턴 3개월(약정금액의 50%), 정규직 전환시 9개월 추가지원(약정금액의 70%),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임

⁵⁴⁾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1816(2013. 2.26), "'13년 중소기업 인턴십 등 고용지원계획" ※ 주요내용: 인턴기간(6개월) 및 약정임금(60%)에서 3개월, 50%로 변경하고, 정규직 기간(4개월) 및 약정임금(50%)에서 9개월, 70%로 상향조정

- 동 사업은 기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부족분정산으로 증액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미 지난 2013년도 제1회 추경시 당초 지원인원 과다산정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132억 9,000만원)중 20억원을 감액조정한 사례가 있는 바, 유사한오류로 금번 추경에 소요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업취지나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앞서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기초(사업대상자)를 보다 정밀하게 산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소관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 사업⁵⁵⁾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13년도 채용예상인원(377명)을 기준으로 3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변경⁵⁶⁾을 통하여 당초 목표인원보다 채용인원이 377명에서 61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번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 부족분 14억 7,400만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임

⁵⁵⁾ 서울 소재 4대 도시형 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분야)중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

⁵⁶⁾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1816(2013. 2.26), "'13년 중소기업 인턴십 등 고용지원계획" ※ 주요내용

① 고용보조금: 취업자급여 월100만원 → 월110만원, 1인당 최대720만원 → 840만원 등

② 취업장려금(1인당 최대 330만원 지원): 채용후 3개월 30만원, 6개월 50만원, 9개월 100만원, 12 개월 경과시 150만원 → 채용후 2개월 경과시 55만원씩 6회 지원

〈표 4-15〉경제진흥실 추경편성현황 (시비 증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754	220	974	중기청 사업대상 추가선정
중소기업 인턴십	9,677	4,387	14,065	채용인원 증가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3,347	1,474	4,821	채용인원 증가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 '14년 1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당초 본예산(3,682억 2,500만원)보다 400억원을 증액하여 확정내시57)함에 따라 일반회계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40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6〉복지건강실 추경편성현황(시비 증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368,225	40,000	408,225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추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66) 198	(×-) 677	(×66) 875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시범사업 지원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소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시내버스)은 운송적자 보전을 위하여 기정예산(2,088억원)보다 23.9%, 50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⁵⁷⁾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9 (2014. 1. 2), "2014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동 사업은 '04년 7월 시내버스체계 개편에 따라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서울시가 버스업계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바 '14년에는 이월된 재정부족액(2,927억원) 및 당해연도 운송 적자(3,092억원) 등 총 6,019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나, 금년도 본예산은 2,088억원 편성되는 등 매년 예산이 부족 편성되고 있으며 지급시기가 도래한 재정부족 분의 경우에는 버스조합이 대출을 받아 우선 충당하고, 대출이자는 운송비용에 포함시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시 세출재원의 한정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족편성될 수밖에 없고, 금번 추경을 통하여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나 운송적자 증가⁵⁸⁾와 계속사업에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을 통하여 부족재원이 편성되고 있는바 반복적인 추경편성 등 구조적인 재원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소관 교통안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사업은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및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4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동 사업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4. 4)⁵⁹⁾" 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나, 서울시

⁵⁸⁾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적자 : '14년(예상) 3,092억원, '13년 2,802억원, '12년 2,465억원

⁵⁹⁾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7921 ('14. 4.28)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가 발간한 "2014 예산편성 잠정기준(p.45)"에 따르면, 예산편성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목적의 시정시책 홍보·간행물"은 발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간 중복성을 사전심사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17〉도시교통본부 추경편성현황(시비 증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시내버스)	208,800	50,000	258,800	재정지원 부족액 편성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7,475	1,799	9,274	시민의 안전확보, 민원해결
교통안전 맞춤형 교육 및 홍보(신규)	_	475	475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공약)
응급대응 교통운영시설 개선(신규)	_	200	200	응급차량 회차시설 설치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10,600	2,000	12,600	사면보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소관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 국악당 운영은 남산골 한옥마을 내 전통공예관 긴급보수(1억 8,600만원), 전기용량 증설(1억 3,500만원)을 위하여 기정예 산(29억 9,900만원)보다 10.7%, 3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문화재단 출연금은 기정예산(105억 5,800만원)보다 4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출연금의 증액사유로 행사운영비(3억 8,800 만원)와 회의비(1,100만원) 등을 기재하고 있는 바 출연금 추가 지원을 통하여 동네축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서울시가 추경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한다고 하여도 결과 적으로 간접적인 행사운영비 편성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관련법규60) 등에 따른 추경편성 요건은 긴급성이나 의무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소요예산의 증액편성이 추 경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시사편찬사업은 시사편 찬위원회 청사의 누수방지를 위한 지붕교체공사를 위하여 기정 예산(7억 5,700만원)중 시설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단위사업내의 예산전용 혹은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변경 등을 통해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기정 예산의 통계목중 시설비 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전용을 통한 예산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60)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소관 서울시민 체력인증제는 시민들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신규로 행사운영비 1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나
 - 동 사업이 시민의 체력증진과 체력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서울시의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증액요청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추경을 편성하여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사료되지 않는 바, 추경을 통하여 신규사업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8〉문화관광디자인본부 추경편성현황(시비 증액)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	2,999	321	3,320	긴급보수, 전기용량 증설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0,558	400	10,958	동네골목길 및 소공원 등을 이용한 행사실시
시사편찬	757	190	947	누수방지를 위한 지붕공사
한양도성 현장관리체계 구축	_	60	60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장관리체계 구축
서울시민 체력인증제		100	100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의 행사 개최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	888	280	1,168	시설비 추가소요

□ 재무국 자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은 금년도 세입 예산중 서울의료원 강남분원⁶¹⁾에 대한 매각을 계획한 바, 금년 10월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실제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5억 8,000만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9〉 재무국 추경편성현황 (시비 증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022	580	1,603	실소요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납세조합 보조	334	163	497	법정교부금 추가편성

- □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소관 지방교육세 전출은 기정예산(1조 1,284억 7,800만원)보다 3.0%, 339억 6,100만원을 증액편 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증액요청한 것임
 - 지방교육세 전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2에 근거 하여 지방교육세⁶²⁾의 10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써

⁶¹⁾ 매각대상 : 강남구 삼성동 171, 171-1 (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규모: 토지 31.543.9㎡, 건물연면적 27.743.6㎡

재산가액: 3,640억원 (토지 공시지가액 3,539억원, 건물 시가표준액 101억원)

^{62) 「}지방세법」 제151조에 근거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20%, 등록면허세액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 50%, 주민세 균등분세액 25%,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이며 **지방세전출**은 지방세(보통세) 시세총액의 10%를 재원으로 함(※단,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특별시분 재산세 제외)

- ① '13년도 현년도 시세 정산금⁶³⁾ △32억 7,600만원, ② '13년도 전년도 시세 정산금⁶⁴⁾ 216억 9,400만원, ③ 취득세 정부보전분 정산⁶⁵⁾ 155억 4,200만원 등을 상계하여 339억 6,1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이를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소관 지방세 전출은 기정예산(9,368억 100만원)보다 3.7%, 344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증액요청한 것임
 - 지방세 전출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2에 근거하여 특별시세 총액의 10%⁶⁶⁾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써 ① '13년도 현년도 시세 정산금⁶⁷⁾ 54억 9,600만원, ② '13년도 전년도 시세 정산금⁶⁸⁾ 134억 2,000만원, ③ 취득세 정부보전분 정산⁶⁹⁾ 155억 4,200만원 등을 상계하여 344억 5,9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이를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3) &#}x27;13년도에 부과되고, '13년도에 징수되었으나 정산되지 않은 전출금

^{64) &#}x27;13년도 이전에 부과되고 '13년도에 징수되었으나 정산되지 않은 전출금

^{65) &#}x27;11년 이후 정부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줄어든 지방교육세 등을 지방으로 보전중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에 근거한 지방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재산분 제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제외), 자동차세 등 특별시세 총액의 10%를 재원으로 함

^{67) &#}x27;13년도에 부과되고, '13년도에 징수되었으나 정산되지 않은 전출금

^{68) &#}x27;13년도 이전에 부과되고 '13년도에 징수되었으나 정산되지 않은 전출금

^{69) &#}x27;11년 이후 정부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줄어든 지방교육세 등을 지방으로 보전중

〈표 4-20〉 교육협력국 추경편성현황 (시비 증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지방교육세 전출	1,128,478	33,961	1,162,440	전년도 시세정산분 증가, 취득세 정부보전분 정산
지방세 전출	936,801	34,459	971,261	전년도 시세정산분 증가, 취득세 정부보전분 정산
쾌적하고 가고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0	1,759	1,759	신규 편성요청

- □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소관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 사업추 진은 용산구 이촌로 일부 0.85㎞에 설치된 전신주(15본)를 지 중화 하고자 기정예산(25억 4,100만원)보다 7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회계연도중 사업추진이 확정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해당지역에 대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6월 용산구와 한국전력이 지중화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한 국전력공사와 50:50으로 사업비를 매칭하고 있어 시비의 대응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점진적으로 전신주에 대한 지중화가 추진되고 있어 유사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요예산 편성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한국전력의 대응편성이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지중화사업에 대해 한국 전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소관 제설대책 추진은 폭설에 대비한 제설제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확보목표량(69,600톤)대비 부족량(13,900톤)에 대한 부족예산 5억원(재료비)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이나
 - 지난회계연도 폐쇄직전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결정되어⁷⁰⁾ 이를 이미 세입처리하고, 금번 추경을 통하여 기교부된 사업비 5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p.181~182)에는 금번 추경안에 편성 요청한 5억원이 이미 세입재원으로 확보되어 있고, 이를 세 출예산과 연동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충분한 제설제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예산 필요 함"으로만 기재하고 있는 바, 기확보된 세입재원과 이와 연 동된 세출편성을 당연시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사업별설명서 작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됨
-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추진은 서울역 고가를 보존 시설물로 재활용함으로써 외국사례와 같이 랜드마크로 재탄생 시키고자 국제현상설계에 소요되는 사업비 6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⁷⁰⁾ 안전행정부, 교부세과-2316 (2013.12.27.), "2013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 추경편성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실국의 적극성은 이해되나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성 등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하여 부족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현상공모를 위한 동 사업을 추경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15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병행되 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역 고가와 관련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사업(푸른도시국 조경과)에 행사성경비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하고 있어 사업의 조기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소관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은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상 139개 도로시설물⁷¹⁾에 대한 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자 인건비를 포함한 민간위탁금 5억 7,4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바
 -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은 최소화되어야 하나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14.6.30)를 얻은 바 있어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⁷¹⁾ 한강교량 1개, 일반교량 59개, 고가차도 21개, 입체교차로 20개, 터널 3개, 지하차도 28개, 복개구조 1개, 언더패스 6개

- □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소관 안양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 는 시설비 1억 9,8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추경편성은 최소화되어야 하나 동 사업의 경우, 기존 공사업체가 공사를 포기하여 정산후 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14.4.9)시킨 바 새로운 도급업체가 선정되어 금년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어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추경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써
 - 기존 업체의 공사 포기이후 사업주관부서가 기편성된 시설비를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공사완료시 신규선정업체에 지급한다면 금번과 같이 추경 편성요청은 불필요 하였겠으나 이 경우, 회계질서 문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 사업주관부서가 세외수입 처리후 부족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을 요청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판단됨
- □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중 남부순환로 (개봉역주변) 구조개선은 시설비(기정예산 55억 9,200만원) 보다 33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증액편성 요청한 시설비중 한전 지중화⁷²⁾ 27억 8,300만원 의 경우, 한국전력과 각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지중화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대한 편성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72) &#}x27;14년 8월부터 '15년 6월가지 남부순환로 개봉역 일원, 1,870m (남측: 1,023m, 북측 851m)

- 아울러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보도신설(620m, 4억 2,000 만원)을 추진하고, 인접 아파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방음벽 설치(86m, 1억 6,000만원)를 금번 추경안에 편성요청한 바, 추경편성이후 계절적 영향으로 사고이월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어 편성요청된 예산의 적기집행에 주의해야 할것으로 판단됨
- □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중랑교 보수·보강공사는 기정예산(19억원)보다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부족예산 미확보시 9월이후 잔여공정이 시행 될 수 없고, 당초 공사완료시점 ('14.12.31)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바
 - 금년도 본예산 심사시 당초 24억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나
 의회의 예산심사결과 △5억원이 감액된 사업으로 추경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시설비의 규모를 떠나 당초 본예산 심사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의결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증액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1〉도시안전실 추경편성현황 (시비 등 증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추진	2,541	700	3,241	지중화 시설비 매칭편성
제설대책 추진	7,089	500	7,589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도로함몰 탐사장비 구매	_	900	900	도로함몰 특별관리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24,662	574	25,236	민간위탁금 증액분
안양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	_	198	198	공사재개에 따른 소요예산편성
하천내 석면함유 조경석 정비	_	500	500	우이천 등 6개 하천내 석면함유 조경석 정비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구조개선	5,592	3,363	8,955	한전지중화 등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추진	_	600	600	국제현상설계에 소요될 사업비
중랑교 보수,보강공사	1,900	450	2,350	부족예산 편성요청
노후하수관로 조사(중점관리구역)	_	1,060	1,060	도로함몰 특별관리
사천교 확장	-	150	150	가재울뉴타운3구역조합의 교통개선분담금 기확보(20억원)
삼성동 봉은사로 사각형거 신설	4,821	850	5,671	지장물(광역상수도)로 인한 공사연장 증가분
보라매동 675-3~673-227호 외 1개소 하수관 개량	_	360	360	통학로주변 도로함몰에 따른 노후 하수관 개량
월정로 28길 156 ~ 월정로 17길 10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_	1,250	1,250	노후 시설물 보강
노후 하수관로 긴급보수 및 정밀점검 보수보강	-	1,000	1,000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치동 한티역~삼아빌딩 주변 하수관 신설및개량	_	421	421	침수방지 관로계획 변경분
역삼동 814~서초동 1304 하수관거 확장공사	_	700	700	지장물(통신, 한전 등)로 인한 공사연장 증가분

-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소관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사업은 총 괄건축가 운영을 위한 용역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제도가「건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입하는 것이라 하나 강행규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서울시 건축기본조례」에 총괄건축가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다 명확히 한 이후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절차적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조례의 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사업주관부서가 조례개정의 결과를 낙관하여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바, 이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기재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로 사료되어 편성요청한 예산전액을 삭감하고, 조례의 개정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소관 방범우수 건물 인증 사업은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이른 바 '방범 우수 건물'에 대해 서울시가 인증마크를 부착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편성요청한 예산액의 규모가 서울시 전체예 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여 편성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될 수 있으나
- 기타운영비 등이 포함된 동 사업의 산출내역이 지방재정법 등이 열거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 추경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보다 단위사업내 집행잔액 등을 전용하여 기편성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22〉 주택정책실 추경편성현황 (시비 증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0,172	17,137	237,309	건축공정별 매입비 부족분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94	30	124	총괄건축가제도 운영 (용역, 연구과제수행)
방범우수 건물 인증	_	20	20	신규 편성요청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기정예산 (31억 1,100만원)보다 3억 7,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남부지역 산림으로 참나무시들음병이 확산됨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급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표 4-23〉 푸른도시국 등 추경편성현황 (시비 증액)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푸른도시국	산림병해충방제	(×2,124) 3,111	(×-) 372	(×2,124) 3,483	긴급방제
"	서울, 꽃으로 피다	1,957	120	2,077	서울역고가를 보행전용 문화공간으로 조성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9호선 1단계 건설	0	1,200	1,200	노량진역 환승통로 건설 (지장물 이전비)
시립미술관	시민큐레이터 운영	0	30	30	신규 편성요청
의회사무처	의정정보화 지원	242	220	462	소요예산 부족

〈표 4-24A〉시비 등 증액요청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기획조정실	감채기금 전출금	0	106,000	106,000	감채기금 전출금
도시교통본부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시내버스)	208,800	50,000	258,800	재정지원 부족액 편성
복지건강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68,225	40,000	408,225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추가
교육협력국	지방세 전출	936,801	34,459	971,261	전년도 시세정산분, 취득세 정부보전분
교육협력국	지방교육세 전출	1,128,478	33,961	1,162,440	전년도 시세정산분, 취득세 정부보전분
주 택 정 책 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0,172	17,137	237,309	건축공정별 매입비 부족분
여 성 가 족 정 책 실	보육돌봄서비스	(×46,074) 126,369	(×0) 15,672	(×46,074) 142,042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경 제 진 흥 실	중소기업 인턴십	9,677	4,388	14,066	채용인원 증가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7,718	3,930	51,648	종사자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증액
도시 안 전실	남부순환로 (개봉역주변)구조개선	5,592	3,363	8,955	한전지중화 등
도시교통본부	천호대로중앙버스전용 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10 600	2,000	12,600	사면보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도시교통본부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7,475	1,799	9,274	시민의 안전확보, 민원해결
교육협력국	쾌적하고 가고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0	1,759	1,759	신규 증액

〈표 4-24B〉시비 등 증액요청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경제진흥실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3,347	1,474	4,821	채용인원 증가
도시 안 전실	월정로 28길 156 ~ 월정로 17길 10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_	1,250	1,250	노후 시설물 보강
	도시철도9호선 1단계 건설	_	1,200	1,200	노량진역 환승통로 건설(지장물 이전비)
도시 안전실	노후하수관로 조사 (중점관리구역)	_	1,060	1,060	도로함몰 특별관리
"	노후하수관로 긴급보수 및 정밀점검 보수보강	_	1,000	1,000	도로함몰 특별관리

〈표 4-25A〉시비 등 증액요청 사업현황 (10억원 미만)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도시안전실	도로함몰 탐사장비 구매	_	900	900	도로함몰 특별관리
n,	삼성동 봉은사로 사각형거 신설	4,821	850	5,671	지장물(광역상수도)로 인한 공사연장 증가분
"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추진	2,541	700	3,241	지중화 시설비 매칭편성
"	역삼동 814~서초동 1304 하수관거 확장공사	_	700	700	지장물(통신, 한전 등)로 인한 공사연장 증가분
복지건강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66) 198	(×-) 677	(×66) 875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시범사업 지원
도시안전실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추진	1	600	600	국제현상설계에 소요될 사업비
재 무 국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022	580	1,603	실소요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도시안전실	자동차전용도로 도로 관리위탁	24,662	574	25,236	민간위탁금 증액분
n	제설대책 추진	7,089	500	7,589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
n	하천내 석면함유 조경석 정비	_	500	500	우이천 등 6개 하천내 석면함유 조경석 정비
도 시 교 통 본 부	교통안전 맞춤형 교육 및 홍보(신규)	-	475	475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공약)
도시안전실	중랑교 보수,보강공사	1,900	450	2,350	부족예산 편성요청
"	대치동 한티역~삼아빌딩 주변 하수관 신설및개량	_	421	421	침수방지 관로계획 변경분
문 화 관 광 디자인본부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10,558	400	10,958	동네골목길 등을 이용한 행사실시
푸른도시국	산림병해충방제	(x2,124) 3,111	(x-) 372	(x2,124) 3,483	긴급방제
도시안전실	보라매동675-3~673-227호 외 1개소 하수관 개량	_	360	360	통학로주변 도로함몰에 따른 노후하수관 개량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	2,999	321	3,320	긴급보수, 전기용량 증설

〈표 4-25B〉시비 등 증액요청 사업현황 (10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문 화 관 광 디자인본부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	888	280	1,168	범죄예방디자인안전마을 개소 확대
경제진흥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754	220	974	중기청 사업대상 추가선정
의회사무처	의정정보화 지원	242	220	462	소요예산 부족
도 시 교 통 본 부	응급대응 교통운영시설 개선(신규)	_	200	200	응급차량 회차시설 설치
도시안전실	안양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	_	198	198	공사재개에 따른 소요예산편성
문 화 관 광 디자인본부	시사편찬	757	190	947	누수방지를 위한 지붕공사
혁신기획관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반 마련	1,684	170	1,854	시설물 안전성 진단 등
비상기획관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	2,070	170	2,240	설계변경 및 구조보강에 따른 공사비 부족
재 무 국	지방소득세 소득분 납세조합 보조	334	163	497	법정교부금 추가편성
도시안전실	사천교 확장	_	150	150	가재울뉴타운3구역조합의 교통개선분담금 기확보(20억원)
푸른도시국	서울, 꽃으로 피다	1,957	120	2,077	서울역고가를 보행전용 문화공간으로 조성
문 화 관 광 디자인본부	서울시민체력인증행사	_	100	100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의 행사 개최
"	한양도성 현장관리체계 구축	_	60	60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장관리체계 구축
주택정책실	서울형공공건축가 운영	94	30	124	총괄건축가제도 운영 (용역, 연구과제수행)
시립미술관	시민큐레이터 운영	_	30	30	신규 순증
주택정책실	방범우수 건물 인증	_	20	20	신규 순증

(4) 시비 등 감액 관련

-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등 지원사업은 기정예산(173억 8,200만원) 중 △8억 9,8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바
 - 교통비 지원대상이 당초(22,550명)보다 △1,105명이 감소하였고, 교육비 지원대상도 당초(19,240명)보다 △739명 감소됨에 따라 불용예상액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불용예상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감추경 요구하는 것이나 본예산 편성시 사업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산정하였다면 불필요한 감추경은 물론 세출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자치구 협조를 통하여 사업대상에 대한 정밀한 수요예측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6〉여성가족정책실 등 추경편성현황 (시비 감액)

실·본부·	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여 성 가 정 책	· 족 실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17,382	△898	16,483	교통비, 교육비 지원대상 감소
기획조정	성실	재정통계 분석관리	500	△400	100	통계개발 대상 조정에 따른 불용예상액
"		지구촌 나눔한마당	497	△453	44	세월호사건으로 행사취소
"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895	△300	595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 폐지에 따른 분담금 미집행

□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소관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은 기정예산 (35억 600만원)중 △14억 6,4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써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예산 중 민주노총이 사업비 반납 통지⁷³⁾를 하여 기 편성된 예산중 일부를 감액편성 하고자 하는 것임

〈표 4-27〉경제진흥실 추경편성현황(시비 감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3,506	△1.464	2,041	사업비 반납

-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은 법정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서울시가 지원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나 기정예산 (274억 4,100만원)중 △138억 2,100만원을 감액요청한 바
 -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틈새계층)은 서울시가 사업종료를 결정 하여⁷⁴⁾ 불용이 예상되는 △64억 9,700만원을 감액편성 요 청한 것이며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금년도 예산편성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빈곤층을 약 2만명으로 산정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사업성격이 유사한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이 대상기준을 완화

⁷³⁾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서울12010-053 (2014. 4.11) "2014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사업 반납 통지" 74) 서울시, 복지정책과-5799 (2013. 3. 4) "비수급 저소득층(틈새계층) 특별지원에 대한 검토보고"

하는 등 실제 지원대상자가 2,115명('14년 7월 현재)으로 감소함에 따라 $\triangle 73$ 억 2,4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감추경 요청건의 경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세출재원에 대한 감액조정은 타당한 결정으로 사료되나 사업물량을 '13년 본예산 4만명, '13년 추경 2만명, '13회계연도 결산 5,657명으로 지속적으로 축소 수정한 사례가 있는 바, 사업취기나 내용을 부각시키기에 앞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밀한산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국비 50%, 시비25%, 구비25%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봉·구로·강북·노원·중구 등 5개소에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구에서 동 센터의 신청을 철회75)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중 일부가 불용될 수밖에 없어 기정예산 (6억 9,900만원)중 △1억 900만원(국비 △6,700만원 포함)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4-28〉 복지건강실 추경편성현황 (시비 감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27,441	△13,821	13,620	비수급저소득층 특별지원 폐지 등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437) 699	(×△67) △109	(×370) 589	자치구(중구) 예산 미확보

⁷⁵⁾ 중구, 건강관리과-15775 (2013.10.31.) "2014년도 지역정신보건사업(알코올) 예산 신청 철회"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소관 지하철 8호선 타당성 조사사업은 8호선연장 강동구 노선이 경기도 주관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중 일부가 불용될 수밖에 없어 기정예산(1억원)중 용역비에 해당하는 시설비 전액(△1억원) 감액요청하고, 강동구 구간 검토에 따른 조사측량을 위하여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1,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해당 구간이 강동구 관련 구간이라 하여도 서울시의 부담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정확히 검토하여 서울시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4-29〉도시교통본부 추경편성현황(시비 감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택시 콜 서비스 지원	2,000	△1,350	650	콜호출방식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불용예상
택시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3,600	△3,100	500	시범사업으로 사업축소함에 따른 불용예상
지하철 8호선 연장선 타당성조사	100	△85	15	경기도예산으로 용역시행 편성된 용역비 미지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중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은 외기온도 상승에 따른 난방수요 감 소로 연료(LNG) 구입비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예산(2,570억 400만원)중 △438억원을 감액요청한 바

- 금번 추경예산안중 동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동일 규모 를 감액요청하고 있어 세입·세출의 상계조정이 필요한 사안으 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동일한 사유로 예산현액(2,418억 2,400만원)의 15.0%, 357억 4,400만원이 불용된 바 있고, 2012회계연도에도 예 산현액(2,208억원)의 4.9%, 109억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 어 금번 추경안과 같이 감추경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번 추경요청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재원에 대한 선제적 감추경보다는 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감추경에 해당하 는 바 감추경이후 발생가능한 외기온도 급감현상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30〉기후환경본부 추경편성현황(시비 감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CDM사업 추진	130	△130	0	등록대상물량 고려 감추경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	257,004	△43,800		외기온도 상승으로 지역난방 열판매량 줄어들어 열생산 연료구입비 감소 예상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특)	19,240	△4,400	14,840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지연으로 '14년 사업비 지출 감소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소관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은 기정예산(149억원)중 △42억 4,3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당초 금년도 본예산은 가감정액을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용재결후 토지보상비가 가감정액보다 감소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을 감소시키고자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소관 청와대 사랑채 운영은 정부가 청와대사랑채를 한국전통문화 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⁷⁶)하였고, 관리운영비는 국비로 충당한다는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의 사용허가⁷⁷)조건에 따라 기정예산(13억 5,200 만원)중 △12억 2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시설개선과 소관 뚝섬승마훈련원 시설개선
 은 뚝섬승마장이 공공승마장으로 계획변경되어 당초 마방바닥
 제 공사를 임시펜스 설치공사로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기편성
 된 예산중 일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 기정예산(1억 2,100 만원)중 시설비 △6,0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⁷⁶⁾ 한국관광공사, 관광서비스개선팀-55 (2014. 1.27.) "청와대사랑채 국유재산 교환 이전 관리운영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⁷⁷⁾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2312 (2014. 2.25) "청와대사랑채 시설관리운영 사용수익허가 승인통보"

〈표 4-31〉문화관광디자인본부 추경편성현황(시비 감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218) 3,319	(×−) △611	(×218) 2,708	경비인력 배치계획 변동 등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 및 조성	14,900	△4,243	10,657	토지보상비 불용액
청와대사랑채 운영	(×676) 1,352	(×△676) △1,202	(×-) 150	청와대사랑채 관리운영비 미사용
뚝섬승마훈련원 시설개선	121	△60	61	마방바닥제 공사 미실시

- □ 재무국 세제과 소관 재정보전금은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 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재산세 징수액의 50%인 특별 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분하는 제도로
 - 금년도 재산세 예상징수액이 증가되어 198억 1,1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이 필요하나 지난회계연도 결산결과 △337 억 4,500만원 감액조정이 필요한 바, 증감분을 상계하여 자 치구에 교부할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기정예산보다 △139억 3,400만원 감액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4-32〉재무국 추경편성현황(시비 감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제 운영	108	△47	60	심사대상사업 감소에 따른 감액
재정보전금	955,632	△13,934	941,697	집행잔액 예상분 감액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359	△512	1,847	관련법령 개정연기에 따른 불용 등 감액

- 교육협력국 광역급식센터 소관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⁷⁸⁾은
 기정예산(29억 4,700만원)대비 39.3%, △11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바
 -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시 서울소재 318개 고교와 29개 특수학교중 120개 신청학교(고등학교 95개교, 특수학교 25개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의 급식지침 변경⁷⁹⁾ 등으로 신청학교중 상반기에는 58개교에만 지원되어 하반기 지원예상액(70개교, 8억 7,500만원)을 고려하여 기정예산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감추경 건의 경우, 사업주관부서로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신청학교 수가 하반기에 대규모로 증가될 변수가 적을 것으로 검토하여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선제적으로 감추경 하 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 신청학교가 무상급식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 사업의 소요 예산을 감추경할 경우, 친환경급식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으며 교육청의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경우 수요증가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동 감추경 요청사안은 보다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⁷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농·축산물 구매에 따른 일반 농·축산물과의 차액지원 및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중인 사업

⁷⁹⁾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1031 (2014. 1. 3.),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주요변경내용 : 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축소(60~70%→50%), ②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금액 축소(2천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

〈표 4-33〉 교육협력국 추경편성현황 (시비 감액)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2,947	△1,160	1,787	신청학교 감소에 따른 지원규모 축소

- □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은평새길 민간 투자사업은 은평구 불광동과 종로구 부암동을 연결하는 왕복4차로, 5.76km(터널 4.8km)의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200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추진중인 사업이나
 - 금년 7월 기본설계 등이 추진되어 기편성된 토지보상비에 대한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전액(200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감추경 사유를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토지보상비 집행이 필요치 않 아 감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나
 - 동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⁸⁰⁾에 근거하여 자치단 체장이 해당사업에 대해 예산의 신규편성을 동의한 바 있어 당해 회계연도중 기정예산 전액에 대한 감추경을 요청하기 보

^{80)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다는 명시이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시설비 전액을 감추경할 경우, 사업포기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감추경 보다는 명시이월후 다음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4〉도시안전실 추경편성현황 (시비 감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4,000) 10,142	(×−) △742	(×4,000) 9,400	주민민원에 따른 위치변경후 재설계 기간 소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7,138) 28,484	(×−) △13,846		실시설계기간 연기에 따른 집행계획 조정
도곡 빗물펌프장 신설	1,000	△1,000	0	반대민원에 따른 공사시행 불가
금호유수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	100	△100	0	서울시 교육청의 관련예산 미편성에 따른 사업불투명
우정아파트~노량진로간 보행공간 조성	70	△70	0	사업추진 곤란
노량진수산시장~여의도간보행 육교타당성 조사및기본계획	100	△100	0	유사 중복사업에 따른 감추경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3,000	△12,500	500	설계발주지연 등에 따른 후속공정 시설비 감추경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교통개선분담금계정)	21,935	△21,600	335	공사지연에 따른 감추경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교통개선분담금 계정)	4,700	△4,600	100	공사발주곤란에 따른 감추경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9,725	△4,400	5,325	공사지연에 따른 감추경
노량진2동 동작구청 주변일대 침수해소	1,500	△342	1,158	D2600mm→D1200mm 변경에 따른 감추경
구로2동 472번지주변 침수방지	1,000	△600	400	한국철도공사 위탁공사비 감소
무교동 하수암거 유로변경	2,050	△1,200	850	하수암거 규격변경으로 사업비감소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7,407	△6,657	750	사업중단에 따른 잔여사업비 감추경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000	△20,000	0	공정 고려 감추경

□ 푸른도시국 조경과 소관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 사업은 사유지에 쉼터를 조성하고 개방하여 시민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소유자의 녹지활용계획 포기로 사업대상지 변경·축소⁸¹⁾ 등이 부득이하여 기정예산(10억 5,000만원) 중 △3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5〉 푸른도시국 추경편성현황 (시비 감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쉼터) 조성	1,050	△397	653	사업규모 축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소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강동구 상일동부터 하남시 창우동까지 총연장 7.725km(정거장 5개소)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82)으로 국고보조금 50억원(시설비 등)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세입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단순 경정을 요청한 것임

〈표 4-36〉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추경편성현황 (시비 감액 등)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250	△110	140	민자협상 지연 불용액 감액
"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345	△245	100	사업 적격성 재검증 사업지연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000) 9,600	(×△1,000) △9,590	(×-) 10	민자협상 지연 불용액 감액
"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5,000	0	5,000	e−호조내 국비종류 변경 (국고보조금→광특보조금)
한강사업본부	한강 저수로 정비	2,316	△651	1,665	준설업무 개선 예산절감액 감액

^{81) 2014}년 사업대상지 중 문화교회(중구 신당동) 측의 사업 포기로, 대상지가 육군사관학교(노원구)로 변경되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됨

⁸²⁾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1,374억 3,100만원(국비 549억 7,100만원, SH부담금 824억 6,000만원)이며 SH부담금 824억 6,000만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

〈표 4-37〉시비 등 감액요청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기후환경본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	257,004	△43,800	213,204	외기온도 상승으로 인한 연료구입비 감소
도시안전실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도로개설(특)	21,935	△21,600	335	공사지연에 따른 감추경
"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000	△20,000	0	공정 고려 감추경
재 무 국	재정보전금	955,632	△13,934	941,697	집행잔액 예상분 감액
도시안전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7,138) 28,484	(×−) △13,846	(×7,138) 14,638	
복지건강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27,441	△13,821	13,620	비수급저소득층 특별지원 폐지 등
도시안전실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회(특)	13,000	△12,500	500	발주지연 등에 따른 후속공정 시설비 감추경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000) 9,600	(×△1,000) △9,590	(×-) 10	민자협상 지연에 따른 불용액 감액
도시안전실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7,407	△6,657	750	사업중단에 따른 잔여사업비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교통분담금)	4,700	△4,600	100	공사발주곤란에 따른 감추경
기후환경본부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특)	19,240	△4,400	14,840	사업지연으로 '14년 사업비 지출 감소
도시안전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교통개선분담금)	9,725	△4,400	5,325	공사지연에 따른 감추경
문 화 관 광 디자인본부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 및 조성	14,900	△4,243	10,657	토지보상비 불용액
도시교통본부	택시내부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3,600	△3,100	500	사업축소함에 따른 불용예상
경제진흥실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3,506	△1.464	2,041	사업비 반납
도시교통본부	택시 콜 서비스 지원	2,000	△1,350	650	비예산사업 추진함에 따른 불용예상
문 화 관 광 디자인본부	청와대사랑채 운영	(×676) 1,352	(×△676) △1,202	(×-) 150	청와대사랑채 관리운영비 미사용
도시안전실	무교동 하수암거 유로변경	2,050	△1,200	850	하수암거 규격변경으로 사업비감소
교육협력국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2,947	△1,160	1,787	신청학교 감소에 따른 지원규모 축소
도시안전실	도곡 빗물펌프장 신설	1,000	△1,000	0	반대민원에 따른 공사시행 불가

〈표 4-38〉시비 등 감액요청 사업현황 (10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여성가족 정 책 실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17,382	△898	16,483	교통비, 교육비 지원대상 감소
도시안전실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4,000) 10,142	(×−) △742	(×4,000) 9,400	민원에 따른 위치변경후 재설계 기간 소요
한강사업본부	한강 저수로 정비	2,316	△651	1,665	준설업무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액 감액
문 화 관 광 디자인본부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218) 3,319	(×−) △611	(×218) 2,708	경비인력 배치계획 변동 등
도시안전실	구로2동 472번지주변 침수방지	1,000	△600	400	한국철도공사 위탁공사비 감소
재 무 국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359	△512	1,847	관련법령 개정연기에 따른 불용 등 감액
기획조정실	지구촌 나눔한마당	497	△453	44	세월호사건으로 행사취소
"	재정통계 분석관리	500	△400	100	통계개발 대상 조정에 따른 불용예상액
푸른도시국	도시녹화 (녹지활용계약쉼터) 조성	1,050	△397	653	사업규모 축소
도시안전실	노량진2동 동작구청 주변일대 침수해소	1,500	△342	1,158	D2600mm→D1200mm 변경에 따른 감추경
기획조정실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895	△300	595	광역경제위원회 폐지에 따른 분담금미집행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345	△245	100	사업 적격성 재검증 등에 따른 사업지연
기후환경본부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CDM사업 추진	130	△130	0	등록대상물량 고려 감추경
복지건강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437) 699	(×△67) △109	(×370) 589	자치구(중구) 예산 미확보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250	△110	140	민자협상 지연에 따른 불용액 감액
도시안전실	금호유수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	100	△100	0	관련예산 미편성에 따른 사업불투명
"	노량진수산시장~여의도간 보행육교타당성 조사및기본계획	100	△100	0	유사 중복사업에 따른 감추경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8호선 연장선 타당성조사	100	△85	15	경기도예산 활용 용역비 미지출
도시안전실	우정아파트~노량진로간 보행공간 조성	70	△70	0	사업추진 곤란
문 화 관 광 디자인본부	뚝섬승마훈련원 시설개선	121	△60	61	마방바닥제 공사 미실시
재 무 국	공공공사 사전계약 심사제 운영	108	△47	60	심사대상사업 감소에 따른 감액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5,000	0	5,000	e-호조내 변경 (국고보조금→광특)

(5) 예비비 관련

- □ 일반회계 예비비⁸³⁾는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액은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⁸⁴⁾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금년도 세수결손 전망 등 서울시가 직면한 세입·세출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당초예산(1,511억 3,700만원)
 대비 △13.7%, △206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1,304억 8,3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추경을 통하여 당초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를 감액조 정할 경우, 추경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⁸⁵⁾의 0.85% 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검토되나

⁸³⁾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 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8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예비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지 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 다.

⁸⁵⁾ 추경예산안 기준 세출예산(17조 2,998억 7,600만원)중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세(1조 1,117억 300만원)과 재산세중 특별시분(8,354억 7,500만원)을 제외한 15조 3,526억 9,800만원대비 0.85%, 1,304억 8,300만원(예비비)임

- 관련규칙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는 것만 정하고 있을 뿐 추경을 통한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바, 동 예비비 조정 내용 경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 단됨
- □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처럼 세출재원의 일정비율 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지 않고 있는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당초 88억 9,100 만원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세입·세출의 균형 을 위해 예비비를 당초보다 77억 4,500만원 증액하여 166 억 3,6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관리계정의 경우에도 당초 예비비 (15억 6,600만원)중 △2,400만원을 감액한 15억 4,200 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고,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에도 당초 예비비(6억 6,100만원)보다 8,500만원 증액하여 7억 4,600만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Ⅳ. 심사결과

-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4. 9. 26.(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예결위원장단 3인에게 위임
 - 위 원 장: 김제리(환경수자원)
 - 부위원장: 김정태(도시계획관리), 이복근(보건복지)
 - 2) 소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4. 9. 27(토) 16:00~16:5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참 석 : 예결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
 - 내 용 :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의
 - O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4. 9. 27(토) 18:00~19:3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예결위원장, 부위원장 2인 집행부 3인(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O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4. 9. 27(토) 22:00~22:5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예결위원장, 부위원장 2인 집행부 3인(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O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4. 9. 27(토) 23:10~23:4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예결위원장, 부위원장 2인 및 예산담당관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소수의견:

-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관련하여 이혜경 위원, 최영수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이 해당 사업에 증액요청된 6억원 전액 삭감 의견 고수
 - 지역주민 민원, 교통대책, 시설물 안전성 등 종합적인 고려 필요하며 전시행정의 결과로 남을 수 있어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의견 제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시 : 2014. 9. 29.(월) 16:30 (제2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김정태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제출된 사업명을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및 현상공모』로 변경하고, 안전성 및 교통영향 조사 후 현상공모 시행을 동 사업의 부대의견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

◇ 첨부 :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1부. 끝.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81

2014년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예산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별첨 :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내역 1부.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 정 예 산 안

2014. 9.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 예산총칙 수정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제	출 안		수	정 안	
제1조 2014년도 세약 계별로 일시 차입 다음과 같다.		·총액 및 회 = 한도액은	제1조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일시차입한도액	회 계 별	예 산 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24,863,265,496	550,000,000	<u></u> —	24,883,265,496	550,000,000
일 반 회 계	17,299,876,012	500,000,000	일 반 회 계	17,299,876,012	500,000,000
특 별 회 계 	7,563,389,484	50,000,000	특별회계	7,583,389,484	50,000,000
기타특별회계	6,770,319,734		기타특별회계	6,790,319,734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14,500,000		(1) —	1,114,500,000	
(2) 교통사업특별회계	1,200,703,000		(2) —	1,220,703,000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8,700,000		(3) —	148,700,000	
(4) 주택사업특별회계	1,268,942,572		(4) —	1,268,942,572	
(5) 도시개발특별회계	1,246,904,000		(5) —	1,246,904,000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97,945,500		(6) —	697,945,500	
(7)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46,800,000		(7) —	246,800,000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26,700,000		(8) —	826,700,000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9,124,662		(9) —	19,124,662	
	793,069,750	5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793,069,750	50,000,000
(10) 지역개발기금	2,069,750		(10) —	2,069,750	
(11) 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0,000	50,000,000	(11) —	791,000,000	50,000,000
 _ 중	략 -	_	 _ 중	략 -	_
제7조 일반회계 예비 한다. - 이 하		,537천원으로 -	제7조 일반회계 예비 한다. - 이 하	비는 130,951 생 략 -	,155천원으로 -

2. 세입·세출 구정내역 총괄

□ 총 괄

			u	호거에 MOL		조 정 내 역		스전에시아
	구		분	추경예산안	소 계	증 액	감 액	수정예산안
총		세	입	24,863,265,496	20,000,000	20,000,000 20,000,000		24,883,265,496
계		세	출	24,863,265,496	20,000,000	20,000,000		24,883,265,496
	일 세 입 반		17,299,876,012	-			17,299,876,012	
	회 계		세 출	17,299,876,012	-			17,299,876,012
	특별		세 입	7,563,389,484	20,000,000	20,000,000		7,583,389,484
	회 계		세 출	7,563,389,484	20,000,000	20,000,000		7,583,389,484
		기 타 특 별	세 입	6,770,319,734	20,000,000	20,000,000		6,790,319,734
		별 회 계	세 출	6,770,319,734	20,000,000	20,000,000		6,790,319,734
		공기업	세 입	793,069,750	_	-	_	793,069,750
		공기업특 별회계	세 출	793,069,750	-			793,069,750

□ 세입예산

구 분	추경예산안		조 정 내 역		수정예산안
т ш	T6세단단	소 계	증 액	감 액	TOMULU
계	24,863,265,496	20,000,000	20,000,000	-	24,883,265,496
일반회계	17,299,876,012	_	-	-	17,299,876,012
특별회계	7,563,389,484	20,000,000	20,000,000	_	7,583,389,484
기타특별회계	6,770,319,734	20,000,000	20,000,000	_	6,790,319,734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1,114,500,000	_	-	-	1,114,500,000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200,703,000	20,000,000	20,000,000	-	1,220,703,000
광역교통시설 특별 회계	148,700,000			-	148,700,00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268,942,572	_	-	_	1,268,942,57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246,904,000	_	-	-	1,246,904,000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697,945,500	_	-	-	697,945,500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사 업 특 별 회 계	246,800,000	246,800,000 -		_	246,800,000
의 료급 여기 금 특별 회계	826,700,000	_	-	_	826,700,000
한 강수 질개 선 특별 회계	19,124,662	-	-	-	19,124,662
공기업특별회계	793,069,750	-	-	-	793,069,750
지 역개 발기 금 특별 회계	2,069,750	-	-	_	2,069,750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791,000,000	-	_	-	791,000,000

□ 세출예산

구 분	ᄎᅺᆐᄊᅅ		조 정 내 역		수정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소 계	증 액	감 액	구성에선인
계	24,863,265,496	20,000,000	20,000,000	-	24,883,265,496
일반회계	17,299,876,012	_	-	_	17,299,876,012
특별회계	7,563,389,484	20,000,000	20,000,000 20,000,000		7,583,389,484
기타특별회계	6,770,319,734	20,000,000	20,000,000	_	6,790,319,734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1,114,500,000	-	-	-	1,114,5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1,200,703,000	20,000,000	20,000,000	_	1,220,703,000
광역교 통시 설 특별 회계	148,700,000	_	-	-	148,700,00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268,942,572	-	-	-	1,268,942,57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246,904,000	_	-	_	1,246,904,000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697,945,500	_	-	_	697,945,500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사 업 특 별 회 계	246,800,000	_	-	_	246,800,000
의 료급 여기 금 특별 회계	826,700,000	_	_	_	826,700,000
한강수 질개 선 특별 회계	19,124,662	-	-	-	19,124,662
공기업특별회계	793,069,750	_	-	_	793,069,750
지 역개 발기 금 특별 회계	2,069,750	-	_	_	2,069,750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791,000,000	-	-	-	791,000,000

3. 세부 구정내역

세 출 예 산

□ 기획조정실

과 정책 단위 사업 사업	사	목 업	명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기 획	조	정	실	734,338,948	734,806,566	467,618	+ 1건 467,618천원
예비비		130,483,537	130,951,155	467,618	(100-801-01) 예비비 130,483,537 → 130,951,155 (467,618)		

□ 복지건강실

과 목				(611 - 66)
정 단 책 위 시 사 업 명 업 업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복지건강실	(×1,910,764,200) 4,277,552,318	(×1,910,764,200) 4,277,215,318	(×0) △337,000	△ 1건 △337,000천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	(×863,711,460) 1,682,943,253	(×863,711,460) 1,682,606,253	(×0) △337,000	
민간의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364,534) 14,981,034	(×364,534) 14,644,034	(×0) △337,000	
공공복지전달 체계 개선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66,250) 875,750	(×66,250) 538,750	(×0) △337,000	(100-306-01) 출연금 ◦ 동마을 복지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150,000 → 80,000 (△7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동마을 복지센터 시범사업 지원 517,000 → 250,000 (△267,000) ※ 시범사업 물량 축소

□ 도시교통본부

정책 사업	과 단위 사업	사	목 업	명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토	시 :	교통	본	부	(×58,182,000) 2,464,705,380	(×58,182,000) 2,464,705,380	0 (×0)	+ 1건 5,000,000 스 1건 △5,000,000
버스: 관리	운영체	계 개	선 5	및	(×8,680,000) 302,757,918	(×8,680,000) 302,757,918	0 (×0)	
		H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버스경영개선			280,195,118	275,195,118	△5,000,000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교통관리계정)		원	269,512,900	264,512,900	△5,000,000	(202-307-09)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50,000,000 → 45,000,000 (△5,000,000)
	버스서 고급회	─┴ 스서비스향상 및 급화		및	(×8,680,000) 22,562,800	(×8,680,000) 27,562,800	(×0) 5,000,000	
		저상 (교통		:도입 계정)	(×8,680,000) 21,700,000	(×8,680,000) 26,700,000	(×0) 5,000,000	(202-402-01) 민간자본보조 ∘ 저상버스도입 21,700,000 → 26,700,000 (5,000,000)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Г	 과		목					(난위 : 전원)
정 책 사 업		사		명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문화관공	광디자	·인본	부	(×91,130,105) 505,934,311 (채30,000,000)	(×91,130,105) 505,434,311 (채30,000,000)	(×−) △500,000	△2건 △500,000천원
문:	화도시	서울	구현	!	(×1,000,000) 85,899,683	(×1,000,000) 85,499,683	(×−) △400,000	
	일반회기 문화시설		형 지	원	53,883,694	53,483,694	△400,000	
	서울문	<u>-</u> 화재 [단 출	· 현금	10,958,000	10,558,000	△400,000	(100-306-01) 출연금 ∘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길 프로젝트 400,000 → 0 (△400,000)
1 1	민체 <i>육</i> 흥발전	및 국	제 스	포츠	(×14,009,671) 159,177,673 (末月30,000,000)	(×14,009,671) 159,077,673 (末月30,000,000)	(×−) △100,000	
1 1 2	일반회기 생활체육	난회계) (×5,312,671) 체육 육성 17,885,809			(×5,312,671) 17,785,809	(×−) △100,000		
	서울시	민체	력인	<u>l</u> 증제	100,000	-	△100,000	(100-201-03) 행사운영비 ∘서울시민 체력측정 행사 개최 100,000 → 0 (△100,000)

□재무국

정책 사업	과 단위 사업	목 사 업 명		명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재		무 국		2,253,731,074	2,253,150,456	△580,618	△ 1건 △580,618천원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관리	91,452,151	90,871,533	△580,618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91,452,151	90,871,533	△580,618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1,602,629	1,022,011	△580,618	(100-201-01) 사무관리비 1,602,629→1,022,011(△580,618) ※ 기존예산 활용방안 검토	

□ 도시계획국

정책 사업	과 단위 사업	사	목 업	명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토	시	계	획	국	(x226,000) 1,059,631,898	(x226,000) 1,060,191,898	(×0) 560,000	+ 3건 560,000천원
도시	계획의	발전	기반	제고	(x226,000) 4,398,882	(x226,000) 4,598,882		
	도시발전연구				(x226,000) 3,798,882	(x226,000) 3,998,882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연구용역)			광 위한	-	200,000	200,000	(100-207-01) 연구용역비 0 → 200,000 (200,000)
도시기	개발의	공공	성 흑	탁보	1,711,326	1,971,326	260,000	
	도시빌	발전 및	! 공공	공개발	911,326	1,171,326	260,000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리 및 네도와	461,326	721,326	260,000	(100-401-01) 시설비 0 → 260,000 (260,000)	
도시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3,367,651	3,467,651	100,000	
	예비비(도시개발)			<u>-</u>	2,583,164	2,683,164	100,000	
		예비비	미(도시	기개발)	2,583,164	2,683,164	100,000	(205-801-01) 예비비 2,583,164 → 2,683,164 (100,000)

□ 도시안전실

								(단귀 · 선전)
정책 사업	과 단위 사업		목 업	명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도	시	안	전	실	(×86,249,503) 1,768,999,988 (채30,000,000)	(×86,249,503) 1,788,999,988 (채30,000,000)	(x−) 20,000,000 (末 −)	_ + 2건 20,100,000천원 _ △ 1건 △100,000천원
치수	및	하천 괸	리		(x13,737,000) 134,864,183	(x13,737,000) 134,964,183	(x-) 100,000	
	하천	복원 및	l 정l	4	(x2,020,000) 41,861,283	(x2,020,000) 41,961,283	(x-) 100,000	
		금호유 활용방 위한 ⁻ 안전진	안 ㅁ 구조돌		-	100,000	100,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금호유수지 활용방안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 0 → 100,000 (100,000)
도로.	시설	물 관리			(x506,000) 86,018,274	(x506,000) 85,918,274	(x−) △100,000	
		및 도 (도시개			(x506,000) 32,421,274	(x506,000) 32,321,274	(x−) △100,000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		600,000	500,000	△100,000	(205-401-01) 시설비 ◦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 600,000 → 500,000 (△100,000) (안전성 및 교통영향조사후 현상공모시행)		
도로	건설	!			(x40,072,000) 451,275,920 (x#30,000,000)	(x40,072,000) 471,275,920 (차 30,000,000)	(x-) 20,000,000 (末H-)	
		도로밍 (교통시		특별회	12,110,000	32,110,000	20,000,000	
	확충(교통사업특별회				-	20,000,000	20,000,000	(202-401-01) 시설비 ∘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0 → 20,000,000 (20,000,000)

□ 주택정책실

정: 사	과 목 책 단위 사 업 명 업 사업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주 택 정 책 실	(×143,813,090) 1,523,424,053	(×143,813,090) 1,523,394,053	(×0) △30,000	△ 1건 △30,000천원
	름답고 매력있는 시건축조성	5,634,673	5,604,673	△30,000	
	도시건축문화 구현	2,454,673	2,424,673	△30,000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	124,000	94,000	△3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 총괄건축가 운영 30,000→0(△30,000)

□ 푸른도시국

		과		목													211 • 123	
정 책 사 업	단 위 삼 업	시	ŀ	업	명	추경예	산(안)	수정0	∥산(안)	증(/	△)감		수	정	내		역	
	<u> </u>	른 5	Ē	시	국		,990,023) 3,475,828		3,990,023) 3,925,828		(X 0) 450,000	[_	1건 1건		500,00 △50,00			
생활	수	변 녹지	디호	학충			(50,000) ,333,900		X 50,000) 0,283,900	4	(X0) \$50,000							
	시민	· 한참여	녹	·지조·	성		(50,000) ,877,000		X 50,000) 3,827,000		(X0) 50,000							
	서울, 꽃으로 피다		피다	2	,077,000		2,027,000	2	△50,000	(100-30 ◦ 주민등 (100-20 ◦ 행사:	공청회 40,000 1-09) 공청회 1-03) 운영비 50,000 1-11) 용 아이	물품) → ! 행사:	구입 5,000 (일비 보 · 5,000 운영비 60,000 보상금 공모2	L상((5, (10 전 건	,000)			
		복원 식물 5			과		992,605) ,634,011		,992,605) 7,134,011		(X 0) 500,000							
1	생티	내계 보	신전	사업			992,605) ,731,011		,992,605) 9,231,011		(X 0) 500,000							
		북한신 탐방로			<u>'</u>] ⊒		-		500,000		500,000	(100-40 • 계단 (100-40 • 시설 ⁵	및 배 0 - 1-03) 부대비	수로 → 490 시설!	정비 년),000 (4	190,		

□ 시립미술관

과 목 정책 위 사업 사 업 명 업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시 립 미 술 관	11,906,559	11,876,559	△30,000	△ 1건 △30,000천원
문화예술 진흥	10,581,862	10,551,862	△30,000	
미술관 운영 활성화	727,949	697,949	△30,000	
시민큐레이터 운영	30,000	-	△30,000	(100-201-01) 사무관리비 10,000 → 0 (△1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금 20,000 → 0 (△20,000)

세 입 예 산

예 산 과 목			<u> </u>	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항	목	메건(원)	T3메인(건)	ਰ(△/ ਰ	수 정 내 역
교통사업특별회계			회 계	1,200,703,000	1,220,703,000	20,000,000	+ 1건 20,000,000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수입)	166,068,759	186,068,759	20,000,000	
	일반부담금(222-02)			150,878,000	170,878,000	20,000,000	(220-222-02) 일반부담금 ◦교통개선분담금 (은평새길) 0 → 20,000,000 (20,000,000)